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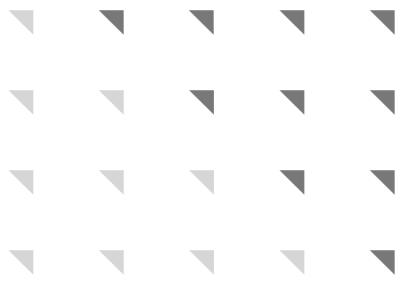
제137회 한림원탁토론회

마약청정국 대한민국이 흔들린다 마약류 사용의 실태와 대책은?

일시 : 2019년 6월 4일(화), 15:00

장소 : 양재동 엘타워 엘하우스홀(8층)





초대의 말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마약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마약 불법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마약 청정국가라는 타이틀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통상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을 넘지 않을 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되지만 인구 5000만 명인 한국의 마약사범은 이미 2015년부터 기준선인 1만 명을 넘어섰고, 국내 마약 사범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는 한번 사용하게 되면 쉽게 중독, 남용, 의존성이 나타나게 되어 중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장의 쾌락이나 고통을 잊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 마약은 심각한 신체·정신적 건강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범죄와 자살 등 사회적 문제까지도 유발하여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약류의 유통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약류중독자의 예방과 치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사용과 관련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마약류 사용의 실태와 대책을 논의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마약류 불법사용 문제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한민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임태환**

한림원탁토론회는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사회 현안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접근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PROGRAM

제137회 한림원탁토론회 ‘마약청정국 대한민국이 흔들린다 마약류 사용의 실태와 대책은?’

사회: 김우호 서울대학교 교수(한림원 의약학부 정회원)

14:30~15:00 (30') 등록

15:00~15:10 (10') 개회사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15:10~15:30 (20') 주제발표 1

한국에서의 마약류 사용의 현황과 법적 제도적 문제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

15:30~15:50 (20') 주제발표 2

외국에서의 마약류 사용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이한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사업팀장

15:50~16:00 (10') Coffee break

PROGRAM

제137회 한림원탁토론회 ‘마약청정국 대한민국이 흔들린다 마약류 사용의 실태와 대책은?’

16:00~17:10 (70') 지정토론

- 좌 장: 권준수 서울대학교(한림원 의약학부 정회원)
- 토론자:
 - (가나다순)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지도실장(회복자)
 - 박진실 법률사무소 진실 대표변호사
 - 윤정식 JTBC 기자
 - 윤홍희 前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팀장
 - 조근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
 - 조의연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천기홍 대검찰청 마약과장
 - 천영훈 인천 참사랑병원장

17:10~18:00 (50') 종합토론

18:00 폐 회

CONTENTS

제137회 한림원탁토론회 ‘마약청정국 대한민국이 흔들린다 마약류 사용의 실태와 대책은?’

I. 주제발표 1 한국에서의 마약류 사용의 현황과 법적 제도적 문제	… 1
•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	
II. 주제발표 2 외국에서의 마약류 사용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19
• 이한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사업팀장	
III. 지정토론 (좌장: 권준수 서울대학교(한림원 의약학부 정회원))	… 37
•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지도실장(회복자)	… 41
• 박진실 법률사무소 진실 대표변호사	… 45
• 윤정식 JTBC 기자	… 49
• 윤흥희 前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팀장	… 51
• 조근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	… 71
• 조의연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73
• 천기홍 대검찰청 마약과장	… 79
• 천영훈 인천 참사랑병원장	… 81

주제발표 1

I

한국에서의 마약류 사용의 현황과 법적 제도적 문제

발제자 약력

성명	조 성 남	
소속	국립법무병원	
1. 학력		
기간	학교명	전공 및 학위
1975~198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학사
1984~1990	고려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
1999~2001	배재대학교 특수법무대학원	석사
2002~2005	배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수료
2. 주요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직책
2019~현재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계약직고위공무원, 원장
2013~2018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	원장
2011~2018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2002~2011	국립부곡병원	계약직고위공무원, 원장
1999~2002	국립공주병원	부이사관, 의료부장
1996~1999	법무부치료감호소	부이사관, 일반정신과장
1988~1996	법무부치료감호소	서기관, 특수치료과장

발제

한국에서의 마약류 사용의 현황과 법적 제도적 문제

...

조 성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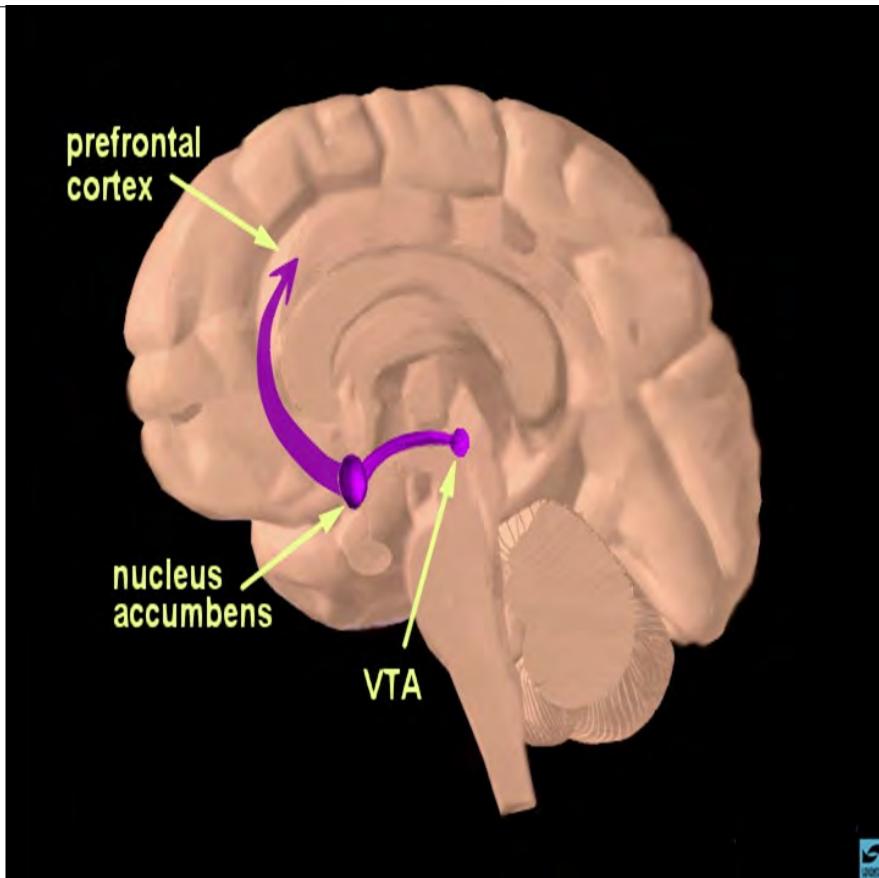
국립법무병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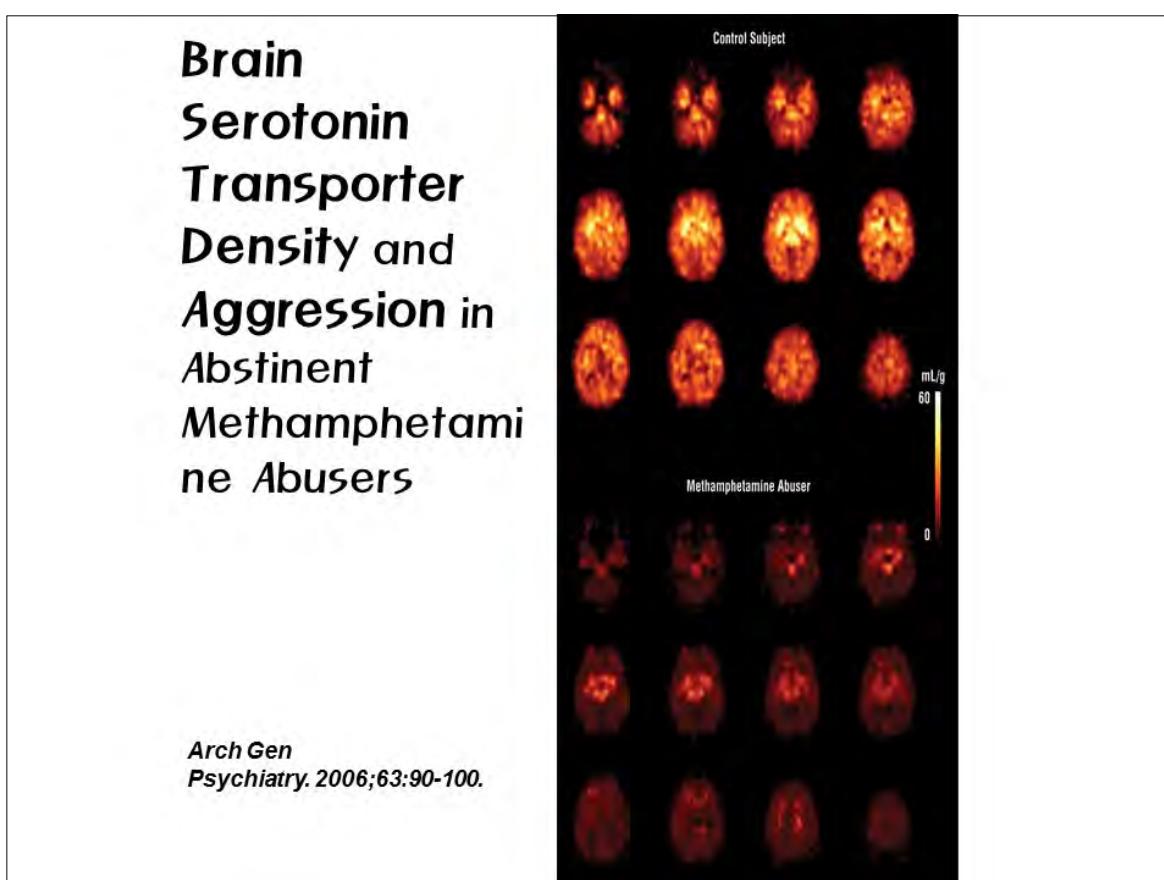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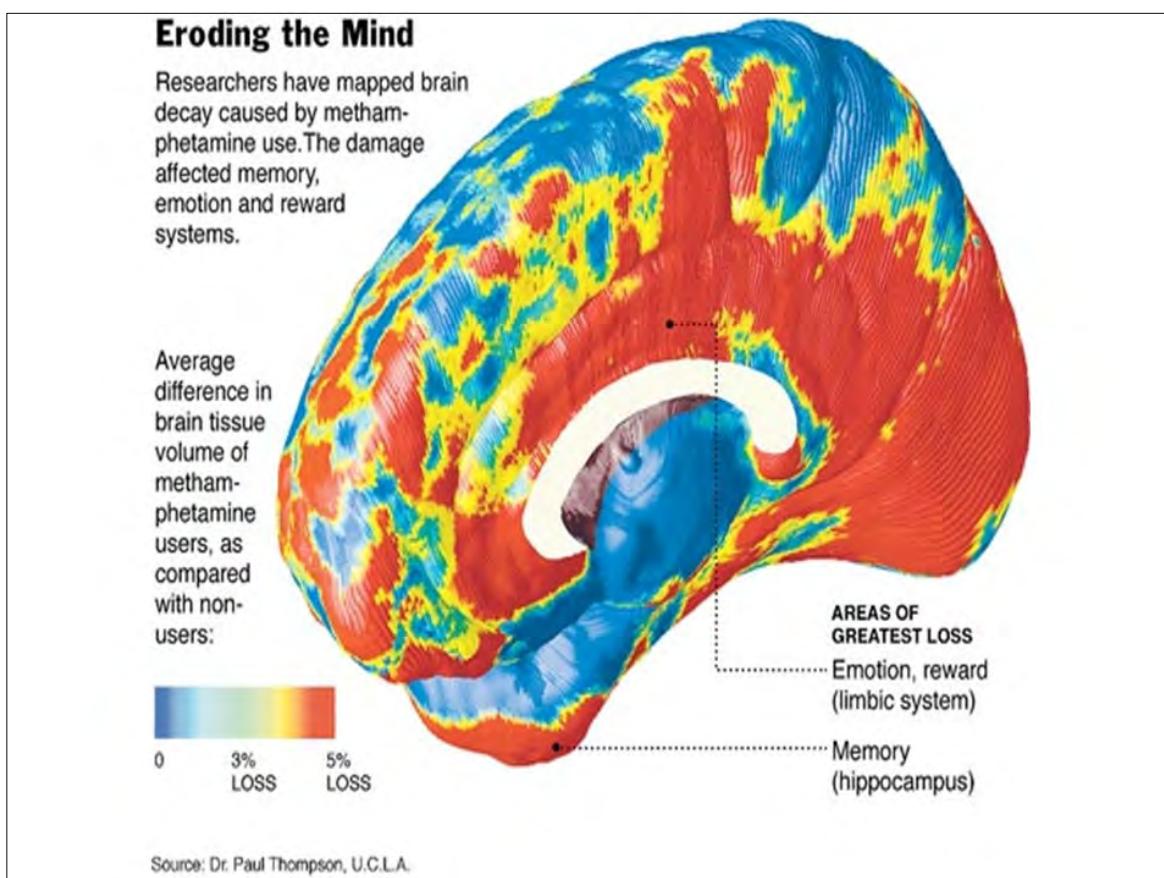
마약류중독의 실태와 법적 제도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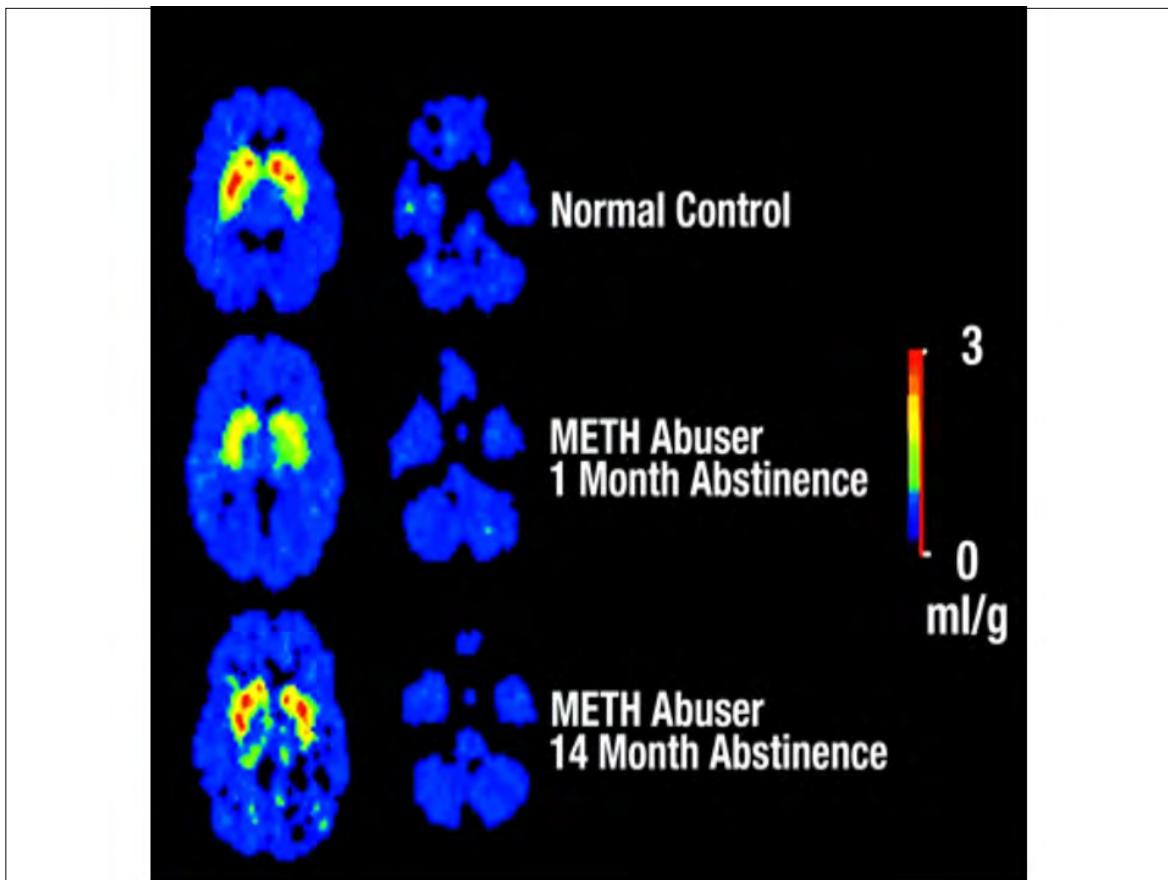
국립법무병원
원장 조성남

중독(addiction)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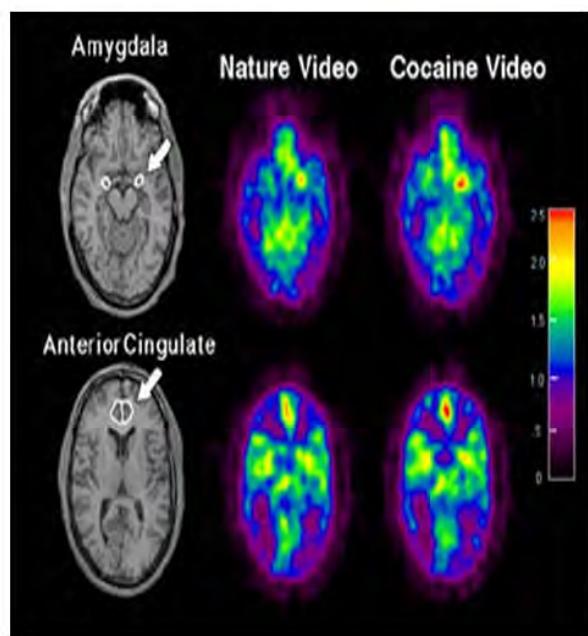
- “중독은 그 현상의 발생과 증상에 있어 유전적, 정신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받는 일차적이고, 진행하며, 치명적 위험을 유발하는 만성질환이며, 뇌의 질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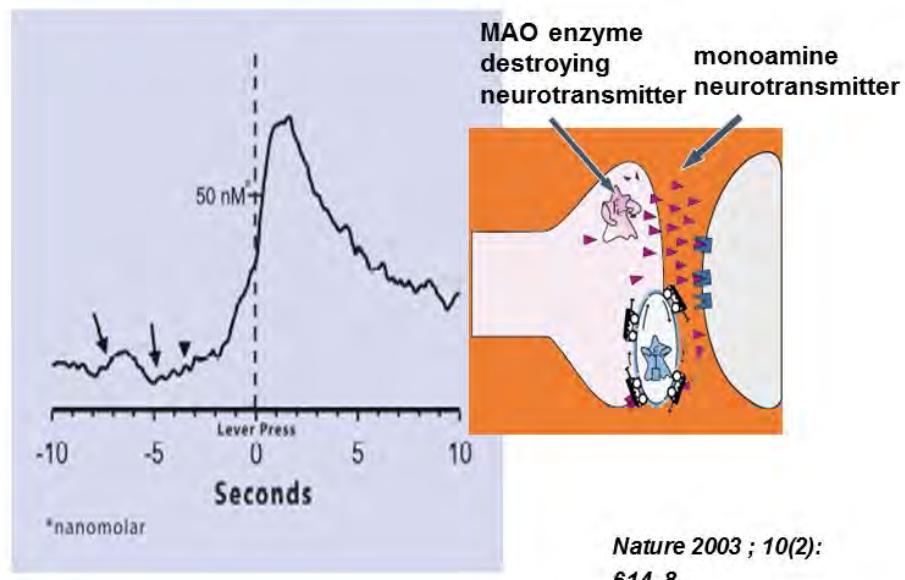


마약 경험은 일생을 간다(해마와 편도)



Am. J.
Psychiatry
1999; 156: 11-18

갈망 & 동기 vs. 뇌안의 도파민



마약류 정책

- 운송차단정책(UN의 권고사항임)
 - 공급사범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 마약거래수익의 무차별 박탈
 - 마약조직의 자금줄 차단-존립기반의 제거
 - 형사소송의 강화
 - 묵비권, 자기부죄거부권, 변호사 선임권 박탈
 - 무죄추정의 원리도 예외
 - 입증책임의 전가
 - 통신감청, 함정수사, 예금계좌 추적의 허용

• 수요감소정책

- 범죄화 정책→ 비범죄화 및 합법화 정책
 - 넘쳐나는 마약 중독자 대책
- 단순투약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의 활성화
 - 마약류 사범의 80%가 단순투약자
 - 치료실태 – 전체 사범의 1.6%
 - 마약류대책협의회(2002년 4월 18일)발족
 - 특별자수기간연장, 치료보호기간연장
 - 교도소 및 구치소내의 마약전담치료실 개설
 - 예방 및 치료재활연구업무의 일원화 – 보건복지부
 - 집행기능이 없음, 형식적 회의에 그침

우리나라의 치료재활 실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2000. 7)
 - 의사의 보고의무 삭제
 - 치료보호제도의 활성화
- 법적 치료의 종류
 - 치료보호(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집행유예 수강명령
 - 치료감호

치료보호

- 검찰의뢰(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 자수에 준함(?)
 - 강제입원치료가 필요할 때
- 자발적입원
 - 치료보호지정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요청
 - 비밀보장, 무료치료
 - 2개월에서 1년까지 가능
 - 검거시에도 처벌약화(?)
- 치료보호예산 부족
- 치료보호지정병원의 부실화
 - 국립병원의 역할부재

교육 및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수강명령

-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및 수강명령
 - 30 – 40시간의 교육
 -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부재
 - 치료적 동기화의 호기
 - 집중적인 동기화 프로그램이 필요
 - 정기적 약물검사와 상담의 명문화 필요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도입(2019. 01.28.)
 - 6개월간 보호관찰
 - 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교육 28시간
 - 치료보호(입원 혹은 외래 치료)

치료감호

- 치료감호법에 의거 판결
 - 2년까지 치료가능
 - 장기치료가 가능
 - 기본 6개월과정
 - 교육 후 교도소로 이송 – 치료의 단절
 - 선고시, 치료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 미흡
 - 치료에 적극적일 경우의 법적 이득 부재
 - 활용이 적음
- 치료명령제
 - 집행유예 후 치료명령
 - 치료감호까지 할 필요성이 적은 경우
 - 활용도가 거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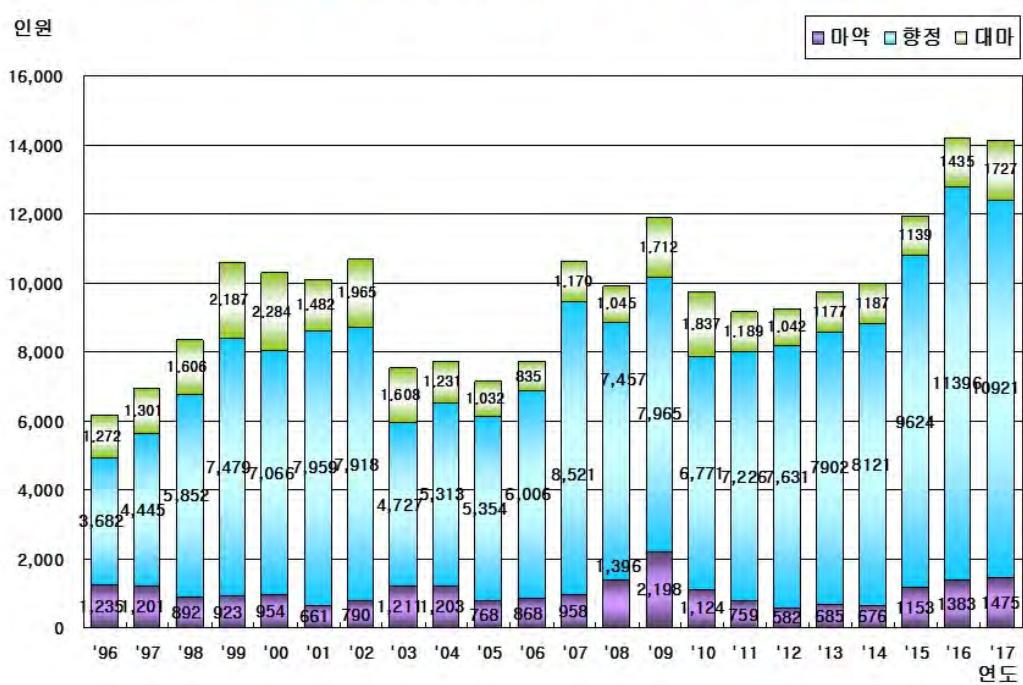
자발적 치료

- 치료환경의 개선
 - 의사의 보고의무 삭제 – 비밀 보장
 - 의료보험의 적용
- 홍보의 부족
 - 비밀 보장에 대한 의심 – 의료진, 환자
 - 정부기관의 적극적 홍보 필요
 - 경찰, 검찰, 법무부 등 책임있는 정부기관이 나서야
- 치료기법의 개발
 - 단기 및 장기 입원치료, 외래
 - 치료 및 재활 협의체 구성 – 전달체계 확립
 - 상담실, 복귀시설, 재활시설, 직업훈련시설, 중간처우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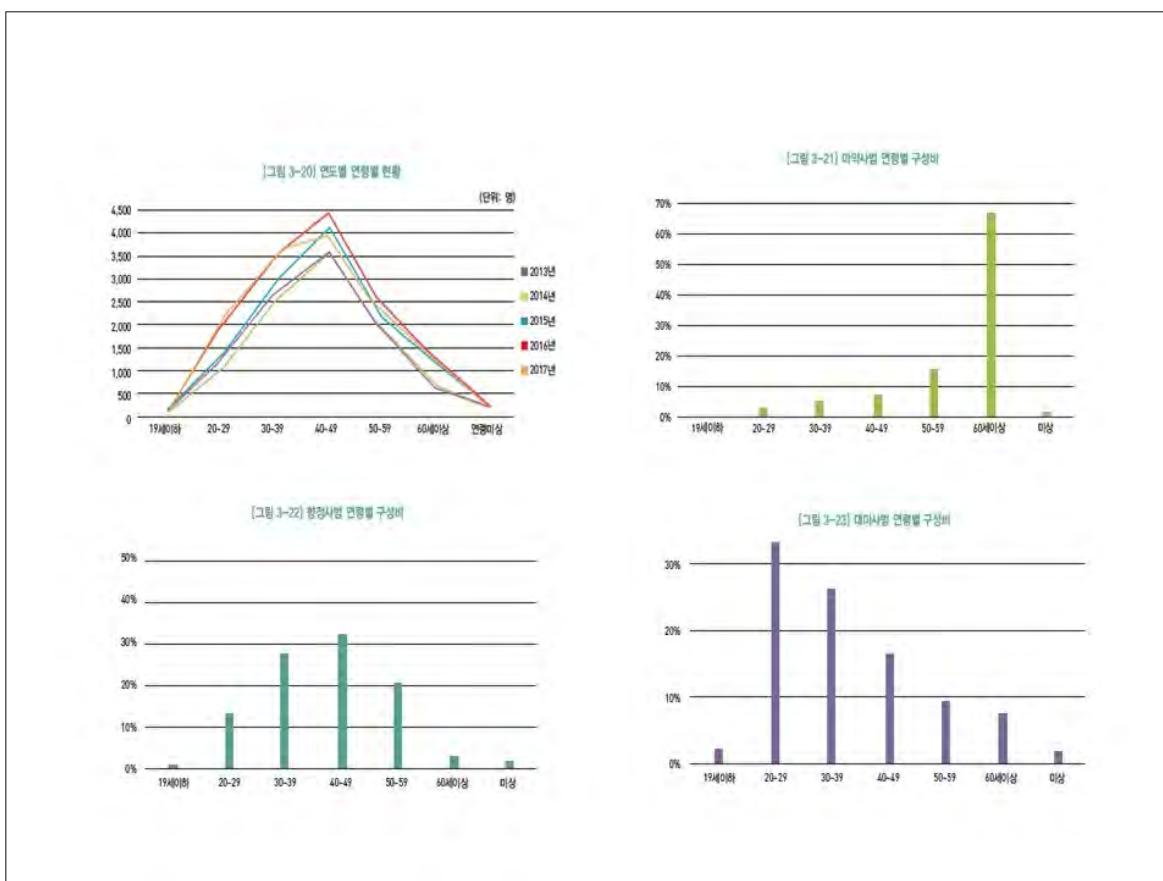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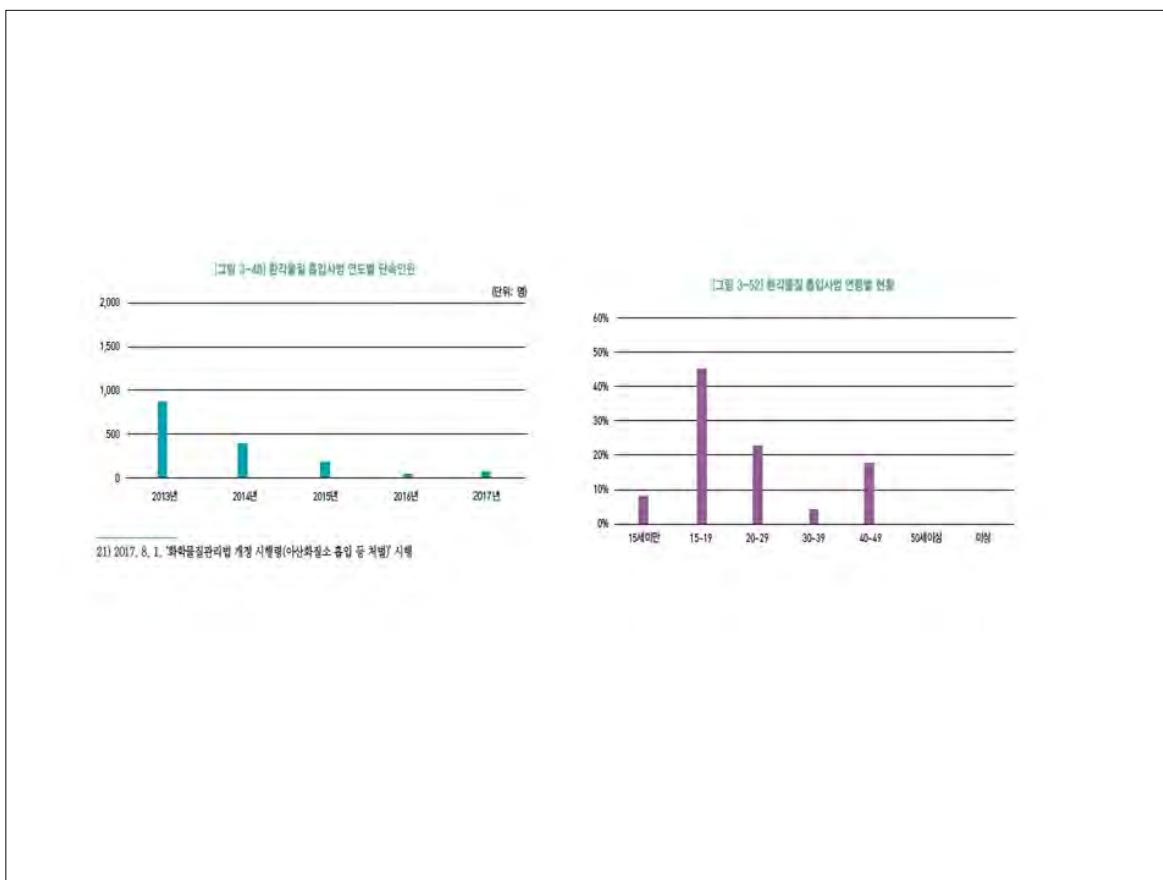
교도소 내 프로그램

-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개설(2016년)
 - 8개 교도소 단약동기증진프로그램
 - 3개월 단위 13주 프로그램, 주 1회 2시간 씩 교육
 - 전반기 48명, 후반기 48명
 - 각 교도소에서 소집하여 교육
 - 교육 후 본 교도소로 이송
 - 52개 교도소내 기본교육 활성화
 - 심리치료팀 구성
 - 8회기의 기본 프로그램
 - 군산교도소 제2심리치료센타 심화과정
 - 3개월간 치료공동체 활동(134시간)

연도별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



■ 제137회 한림원탁토론회 ‘마약청정국 대한민국이 흔들린다 마약류 사용의 실태와 대책은?’



[표 3-73] 마약류별 재범률

(단위: 명)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전체사범	685	7,902	1,177	676	8,121	1,187	1,153	9,624	1,139	1,383	11,396	1,435	1,475	10,921	1,727			
재범인원	127	3,387	377	63	3,327	427	77	4,009	413	101	4,641	543	115	4,451	565			
재범률 (%)	18.5	42.9	32.0	9.3	41.0	36.0	6.7	41.7	36.3	7.3	40.7	37.8	7.8	40.8	32.7			

[표 3-75] 치료보호 실적

(단위: 명)

연도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입원	65	73	191	252	330
	지의	50	51	90	82
	검찰의뢰	14	15	10	7
	기타의뢰	1	-	1	-
외래	지의	6	83	154	209
	검찰의뢰	-	7	9	10
	기타의뢰	1	-	-	-

자료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표 3-76]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단위: 명)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인원	20	73	81	102	208	135	74	87	131	140	421	503	648	722	3,355

※ 2002년부터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시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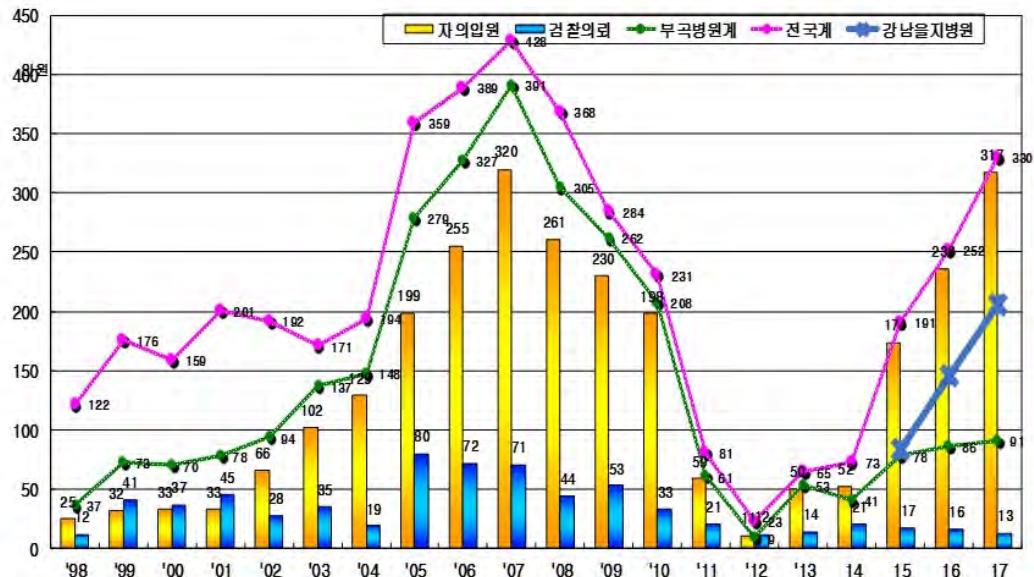
[표 3-77] 치료감호 실적

(단위: 명)

연도별 마약류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36	28	32	25	16
마약	0	0	0	1	0
향정	35	28	30	24	16
대마	1	0	2	0	0

자료 : 치료감호소 김홍과 일소자 기준

Treatment No. of drug addicts



[표 3-78] 치료보호 시설 현황 및 실적

(단위: 명)

구분 시·도	병원명	지정 병상수	치료보호 실적(명)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22개 의료기관	330	65	73	191	252	330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2		1		1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2	4	4		2
	강남을지병원	2		6	83	146	206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2		1	4		
	찰사랑병원	8				29	
대전	찰다남병원	4			1	2	
대구	대구의료원	2	3	4	6	2	2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2		1	2	5	4
울산	큰빛병원	12					1
광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5					
경기	경기도의정부의료원	5	2		1	2	
	용인정신병원	10	3	11	8	3	1
	계오병원	10	2	4	3	3	3
강원	국립춘천병원	10					1
충북	청주의료원	2					
충남	국립공주병원	10					
경북	포항의료원	3					
경남	국립부곡병원	200	53	41	78	86	81
	양산병원	2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2				2	
전남	국립나주병원	10					
제주	연강병원	2			1		

자료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치료보호예산(서울시)

	보건복지부 총 예산	보건복지부 서울시지원금	서울시 예산	서울시 집행 총액	치료보호인원
2015년	65,000,000	30,000,000	30,000,000	60,000,000	
2016년	60,000,000	15,000,000	15,000,000	30,000,000	22(146명중 15%)
2017년	72,000,000	28,000,000	28,000,000	56,000,000	47(206명중 23%)
2018년	92,000,000	47,150,000	38,640,000	85,150,000	54
2019년	120,000,000	75,000,000	75,000,000	150,000,000	

TC를 이용한 약물중독의 치료효과

- New York's Stay'n Out Program
 - 1977년에 설립, ex-addicts에 의해 운영되는 TC
 - 9-12개월이 가장 효과적, 성공률 : M-77.3%, F-92%
- New Jersey's Wharton Tract Narcotics Treatment Program
 - 체포율 : 18%(대조군은 30%)
- The Texas Initiative Program
 - 12만명의 죄수중 80~90%가 약물, 알콜과 관련
 - 체포율 : 18%(대조군 55%)
- California Amity Prison TC
 - three distinct phases(12M), Aftercare (up to 1 year)
 - 재범율 : 26.2% (대조군 63%)
- Delaware's Key-Crest Program
 - Key : 12M intensive residential TC
 - Crest : transitional TC, work release program
 - Aftercare : under parole or supervision
 - Drug-free and Arrest-free rate (after 18M)
 - Key-Crest : 75%, 72% Crest only : 46%, 60%
 - Key only : 34%, 46% HIV edu. : 17%, 36%



Cost-Effectiveness of Drug Treatment

- Treatment is less expensive than not treating or incarceration (1 yr methadone maintenance = \$4,700 vs. \$18,400 for imprisonment)
- Every \$1 invested in treatment yields up to \$7 in reduced crime-related costs
- Savings can exceed costs by 12:1 when health care costs are included
- Reduced interpersonal conflicts
- Improved workplace productivity
- Fewer drug-related accidents

NIDA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www.drugabuse.gov

제언

- 중독에 대한 인식 개선
 - 국민대상
 - 법조계
- 치료보호 활성화
 - 예산의 증액이 필요
 - 치료명령제 시행 등 치료 인원의 증가 예상
 - 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 → 자기부담액만 지원
- 치료조건부 집행유예제도의 도입
 - 약물법원(drug court)
 - 1989년에 Miami-Dade County에 처음 설립
 - 2014년 현재 50개 주에 3,057개의 약물법원이 운영
 - 매년 15만명 이상을 치료
 - 치료유지를 60% 이상
- 교도소내 치료시설의 확충
 -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운영: 교육 전담
 - 약물치료전담시설 운영(치료적 공동체)
- 국립약물중독연구소(NIDA) 설립

주제발표 2

II

외국에서의 마약류 사용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발제자 약력

• • •

성명	이 한 덕
소속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 학력

기간	학교명	전공 및 학위
1981~1988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
2005~2007	충실파워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상담복지전공	석사

2. 주요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직책
1992~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사업팀 팀장
1990~1992	일간보사	기자

발제

외국에서의 마약류 사용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 •

이 한 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사업팀장

외국에서의 마약류 사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 한 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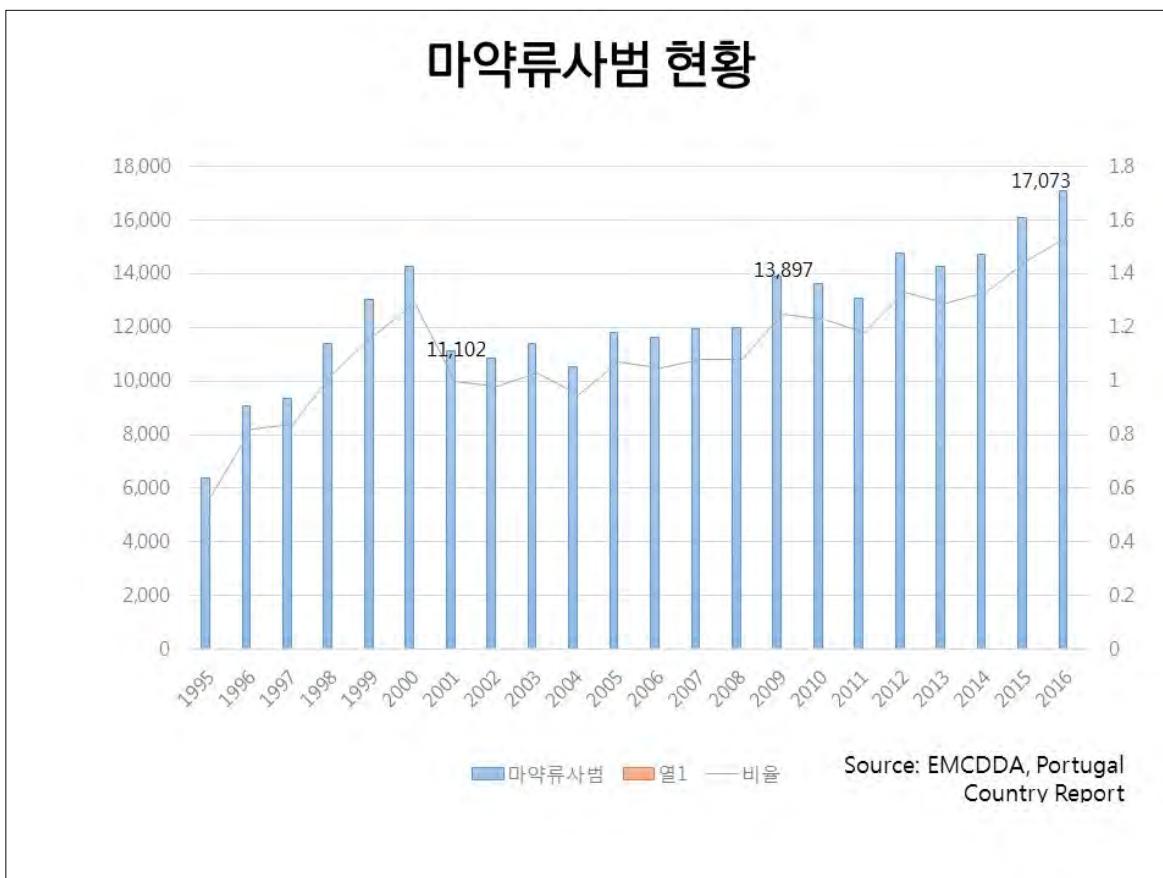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장)

포르투갈의 해결방식

-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마약류 비범죄화 국가로 평가
 - 마약 사용은 안정적이고 유럽연합(EU)의 평균 이하임
 - 남미 및 서 아프리카 산 마약이 다른 유럽 국가로 향하는 환적 지점.
 - 정부는 포르투갈을 통과하는 마약 밀거래자를 적극 조사하여 기소.
 - 신종 향정신성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정 아날로그 화학물질의 소지 및 판매를 범죄화하도록 2013년 법률 개정하여 집행.

포르투갈의 마약류 정책 변화 배경

- (사회적 배경) 1974, 약50년간 세계와 고립시켰던 Salazar 독재 종식
 - 카네이션 혁명으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 및 열린 사회로 전환
 - 자유는 정치, 경제뿐 아니라 마약 사용까지로 확산
 - 혁명 후, 식민지 정책 포기로 식민주의자와 군인들이 다양한 마약을 갖고 귀국
 - 약물이 자유문화의 하나의 상징이 되고, 마약관련 AIDS 사망이 유럽에서 가장 높음
- (마약류 문제) 1980년대 저렴한 헤로인이 유럽에 급속히 확산
- 1990년대 초, 마약사용이 사회의 주요 우려이슈
 - 헤로인 사용 문제 (대마초 문제는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 마약을 주사로 사용하는 문제, 이와 관련된 HIV/AIDS 및 바이러스성 간염관련 문제
- 이에 정부는 1980년대 말 리스본에 TAIPAS 치료센터를 설립
 - 이후 수많은 민간치료 클리닉이 만들어짐



포르투갈의 마약통제정책 및 법률

- 1970, 마약류의 생산, 거래 및 사용 규제 법률(법령 제420/70호)
제정
- 1973, 첫 중독치료센터 개소
 - 마약류 사용의 도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춤(범죄의 원천)
- 1974, 마약 정책에 처음으로 변화, 내각에 정부기구 설치
 - ‘청소년연구센터’, ‘마약류범죄조사센터’
- 1976, 처음으로 마약류 사용 비범죄화 도입
- 1982, 모든 서비스들이 법무부로 이관(예방 및 치료 포함)
- 1987, 최초의 국가 마약퇴치 프로그램(Projecto VIDA) 채택
 - 전문화된 치료센터들이 복지부 산하로 이동

포르투갈의 마약통제정책 및 법률(계속)

- 1993, 새로운 마약법이 채택 - 공급 감축에 대한 기본법
 - 치료책임은 법무부가 아닌 보건부, 처음으로 예방 위임 기관으로 보건부, 교육부 및 청소년부
 - 국가 몰수 자산은 예방, 치료 및 사회적 통합 조치 및 프로그램에 정의된 비율로 배분
- 1998, 마약퇴치위원회 구성해 1999 국가마약퇴치전략 개발
- 2000.11.29. 법률 제30/2000호(2001년 7월 효력)를 채택하여 마약법 틀을 바꿈.

마약퇴치위원회 구성 운영

- (배경) 헤로인 중독 및 HIV감염 문제 계속 확산
- (구성) 9명의 전문가
 - 마약류분야 전문가/연구자(법률 혹은 건강) : 5명
 - 보건부 및 법무부관련 공공기관의 인사 : 2명
 - 마약정책담당 부서의 공무원 : 1명(차관급)
 - 이전의 마약정책과 관계 없는 독립적, 국제적 인정받는 연구자 : 1명(위원장)
- (중심철학) 약물사용은 절대악은 아니며, 마약없는 사회 구현은 환상
- (결론 및 원칙) 약물중독은 질병, 중독자는 범죄자가 아닌 환자
 - 사용을 형사 처리하는 것은 의존자가 자발적 도움을 구하는 것을 방해
 - 범죄화는 처벌의 두려움으로 많은 사용자가 의료적 도움을 구하는 것을 방해

마약퇴치위원회 구성 운영(계속)

- (권고) 이런 원칙에 근거해, 정부에 권고(예방, 치료, 공급감축 등 12개 분야)
 - 강성약물과 연성약물의 소지와 사용의 비범죄화
 - 예방, 해로움 감소, 치료 확대, 약물사용자가 가족, 사회 등과의 연계 유지 지원 등
- (전략 개발) 마약류 분야의 공적 조치를 지도할 13개 옵션 선정
 - 국제협력 강화, 마약류사용의 비범죄화(계속 금지), 1차 예방에 초점, 치료 접근 보장, 해로움 감소 개입 확대, 사회적 통합 촉진, 교도소의 치료 및 해로움 감소 개발, 교도소 대안으로 치료 개발, 조사 및 훈련 강화, 평가방법 개발, 부처간 조정 단순화, 마약류 밀거래 및 자금세탁 퇴치노력 강화, 마약류 분야에 대한 공공 투자 배가 등

마약법 개정(2000.11.29)

- (개정 목적) 약물사용 줄이고 예방, 건강과 치료 차원에서 개인의 욕구 보호
 - “질병을 다스림”이라는 기본개념에 근거함
 - 예방, 해로움 감소, 치료 확대, 약물사용자가 가족, 사회 등과의 연계 유지 지원 등
- (비범죄화) 모든 불법 마약류의 개인적 사용과 사용을 위한 소지 및 취득
 - 평균 10일치의 사용량보다 더 많이 소지는 범죄(마약거래자로 법원에서 법적 처리)
 - 소지 기준 이하인 경우, 소지와 사용은 행정처분(administrative offence) 대상.
- (주요특징) 약물중독만류위원회(CDT)에 의뢰하는 제도 도입 : 보건부에서 관리.
- (주요 시설 변화)
 - 치료 제공 급속 확산
 - 해독시설, 치료공동체 및 중간집 시설 증가
 -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수 증가
 - 대규모 밀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경찰력 강화 등

약물중독만류위원회

(Commissions for Dissuasion of Drug Addiction, CD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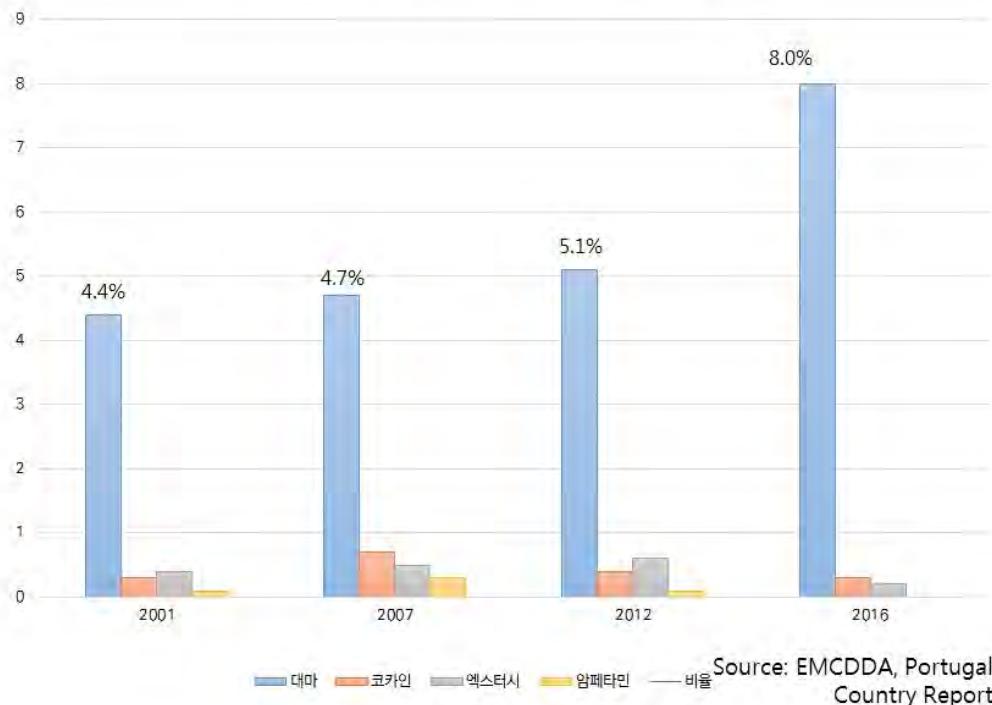
- (설치) 도청소재지(18개) 및 아조レス 자치군도에 3개.
- 소량소지로 체포된 사람에게 소환장 발부되고 소지 마약은 압수.
체포 후 72시간 내에 CDT에 보내짐.
- CDT에서 먼저 사회복지사의 상담 후, 심리학자(정신과의사)와
변호사에 의한 상담이 진행
 - 사회복지사, 정신과의사(이상, 보건부가 지명), 변호사(법무부가 지명) 3명으로 구성
 - 각 CDT는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의 지원받음

약물중독만류위원회(계속)

(Commissions for Dissuasion of Drug Addiction, CD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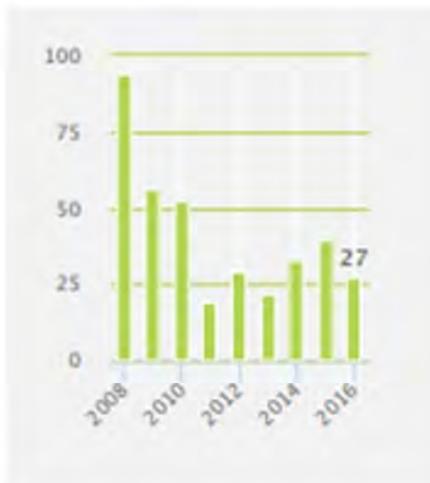
- (종결) 이후 3개월 내에 다시 체포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
 - 다시 체포된 경우, 보통 2일간의 사회봉사명령, 과태료 부과
- 약물사용범죄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제재
 - 경고, 과태료(25유로에서 150유로 사이), 전문면허(예, 의사, 택시기자 등) 권한 정지, 특정한 장소 방문 금지(예, 클럽 등), 특정한 타인과의 관계 금지, 해외여행 금지, 주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 준수, 정부보조금 등 중지
- 중독자인 경우, 재활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지역사회봉사활동.
 - 중독자에게 치료를 유도할 뿐 강제할 수는 없음.
- 자발적 치료조건으로 제재를 중지할 권리가 있음
- 체포되어 의뢰된 사람이 중독자가 아니고 치료나 봉사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15-34세 인구의 최근 사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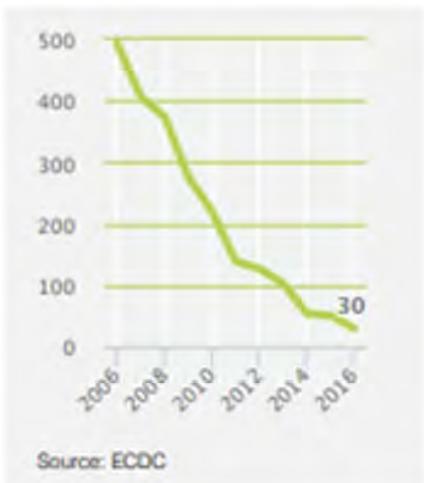


마약류 관련 문제

과다복용 사망 자수



주사 마약으로 인한 HIV 진단



종합

- 도입하였을 때, 약물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마약 여행객 등 문제도 급증하리라는 두려움과 비판 있었지만, 연구자들은 성공적으로 감소시켰다고 평가.
 - 비범죄화로 마약류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았다는 평가
- INCB는 2000년 법률 개정 때 우려하였으나, 2004년 ‘획득, 소지와 남용이 금지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소량의 약물을 기소에서 면제하는 것이 국제마약통제조약과 일치함’ 적시.
- 마약사용은 안정상태 유지, 유럽의 평균보다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
- 치료재활 활성화에도 마약류사범은 증가추세. 다만, 일반시민의 마약류사용 비율은 약간 감소 추세
- 예방, 치료, 사회복지활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비범죄화는 무의미해 짐
- 치료와 해로움 감소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개선
- 전문가집단의 면밀한 검토 및 대책 마련과 사회 환경 조성 마련 필요

호주의 해결방식

- 마약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
 - 최근 메스암페타민의 문제가 급속 확산
 - 마약정책의 급격한 변화 인식으로 마약류 문제 급속 악화.

마약정책 개관

- 1914-1985: 억제정책(Restrictive drug policy)
 - 1900년부터 1960년대 초부터 약물사용 수준 낮음
 -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약물사용 증가
 - 1980년대 초반 주사마약 사용관련 등 포함해 HIV/AIDS 증가
- 1985-1997 해로움 감소(Harm minimisation) 정책
 - HIV/AIDS 감염 감소 성공
 - 1998년까지 약물사용 급속 증가
 - 1998- 강력한(Tough) 마약전략 도입.
 - 해로움 감소 접근법을 유지하면서 풍부한 자금
 - 주사 마약사용관련 HIV/AIDS 감염은 낮은 상태 유지
 - 약물사용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

60년대 이후 마약상황과 대응

- 1960년대 말까지 마약법은 아주 성공적이었음.
- 1960년대 말 불법 약물의 사용이 급증 : 주로 대마와 헤로인
 - 히피 문화의 영향
 - 베트남전 참전 많은 젊은 미군들이 호주로 휴가와 새로운 마약문화 확산 – 대마와 헤로인 시장을 만듦
- 뉴사우스웨일즈 대마 체포자는 1966년에서 1969년 사이 1천% 증가
 - 1970년대 초에 뉴사우스웨일즈에서 다른 주로 확산
- 1970년대 초반 헤로인 의존 증가.
-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억제 기반 마약통제정책 추진
 - 법집행기관에 더 많은 지원 제공
 - 처벌을 최대한 높이고, 국가범죄수사국(National Crime Authority)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립
 - 수익몰수 법률과 기관도 설립(민사자산 몰수법, civil asset forfeiture laws).

60년대 이후 마약상황과 대응(계속)

- 전례 없는 집중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약 문제는 계속 악화됨
 - 80년대 초 HIV/AIDS 출현과 20년 동안의 마약관련 범죄의 증가
- 80년대 중반 마약통제정책 평가하고 방향을 재조정해 예방과 치료 강조
- 85년, 국가마약퇴치캠페인(NCADA)은 새로운 정책 방향을 체계화(- 98)
 - NCADA는 마약사용이 기본적으로 건강문제로 취급 강조
 - 핵심 특징 : 마약사용은 결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복잡한 현상이라는 인식. 과도한 징벌적 접근법은 부분적으로 개정되었고 공중보건 및 폐해를 감소시키는 데 초점.
 - 마약 정책이 연방 법무부(Attorney's Department)에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로
- 정책전환으로 오해되거나 의도적으로 당국이 약물에 대해 패배주의적이고 부드러워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짐.
 - 약물사용은 계속 불법. 대마 사용에 대한 일부 형사법적 처벌이 과태료로 바뀜.
 - 공급통제가 폐지되지 않았지만 법집행의 우선순위가 낮아짐
 - 예방과 치료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었지만 충분한 재원은 없었음
 - 결국 약물 남용은 계속 증가. 단, HIV/AIDS 감소에는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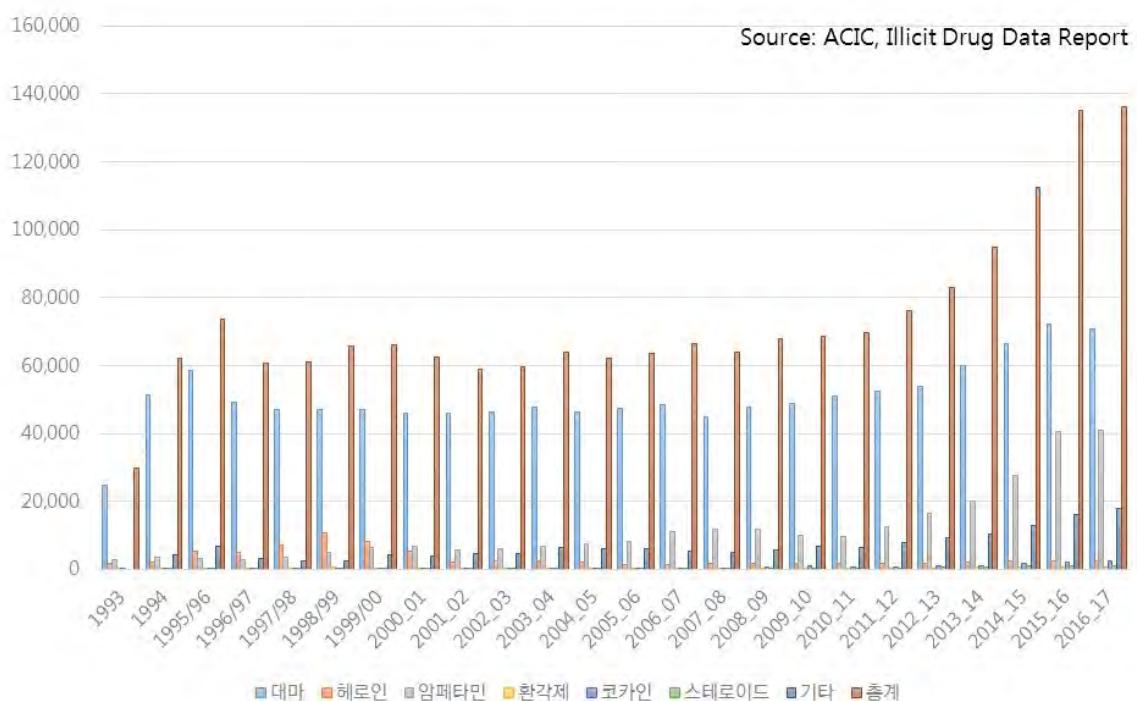
60년대 이후 마약상황과 대응(계속)

- 93년, 국가마약전략(NDS) 채택, Harm minimization 계속 유지
- 98년, 강력한(Tough) 마약전략 도입.
 - 마약류 공급 차단을 위한 법집행 강화
 - 수요 및 해로움 감소 정책 유지, 조사연구
- 이후 마약퇴치전략은 Harm minimization에 기반을 둠.
 - 수요감소, 공급억제, 해로움 감소라는 3대 축의 균형을 강조.
(법집행과 범죄예방이 마약관련 해로움을 줄이기 위한 보건 및 기타 전략들과 통합 필요성 강조)
 - 국가마약전략 1998/99-2002/03
 - 국가마약전략 2004-2009
 - 국가마약전략 2010-2015
 - 국가마약전략 2017-2026

마약퇴치전략의 기본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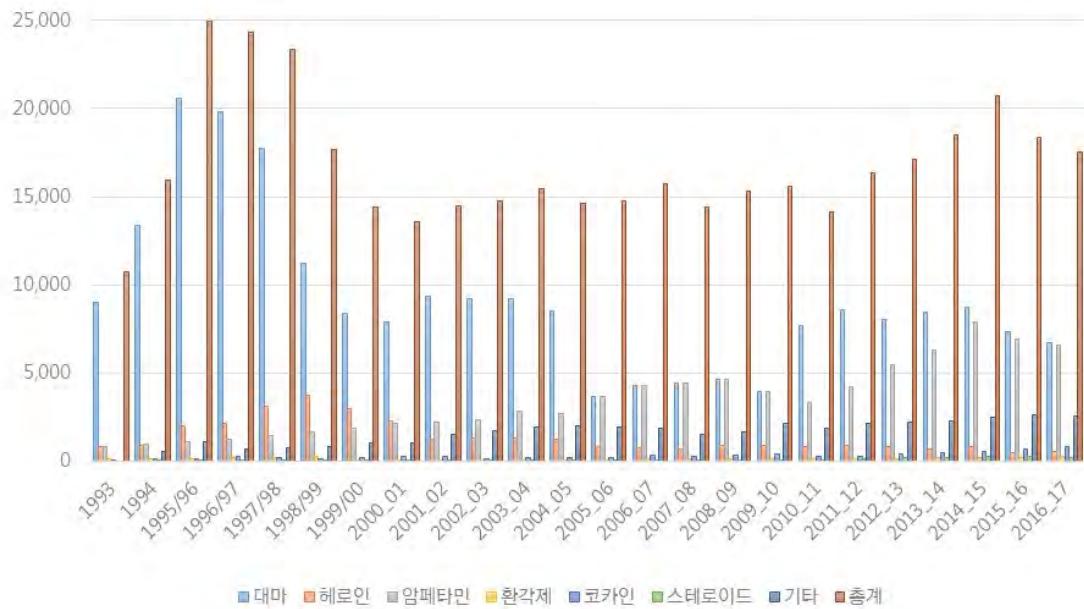
- Harm minimization
 - 공급 감소, 수요 감소, 해로움 감소
- 포괄적 접근
 - 합법 약물(담배, 술, 의약품), 불법 약물 및 환각흡입물질 모두를 포괄
- Partnerships
 - 국가마약퇴치전략 개발, 이행에 보건, 교육, 법집행을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들의 조정이 핵심
 - 지역사회, 산업계, 언론, 연구, 시민 등 포함
- Balanced Approach
 - 공급 감소, 수요 감소, 해로움 감소 간의 균형 강조
- 증거 기반 정책 및 평가

연도별 마약류사범(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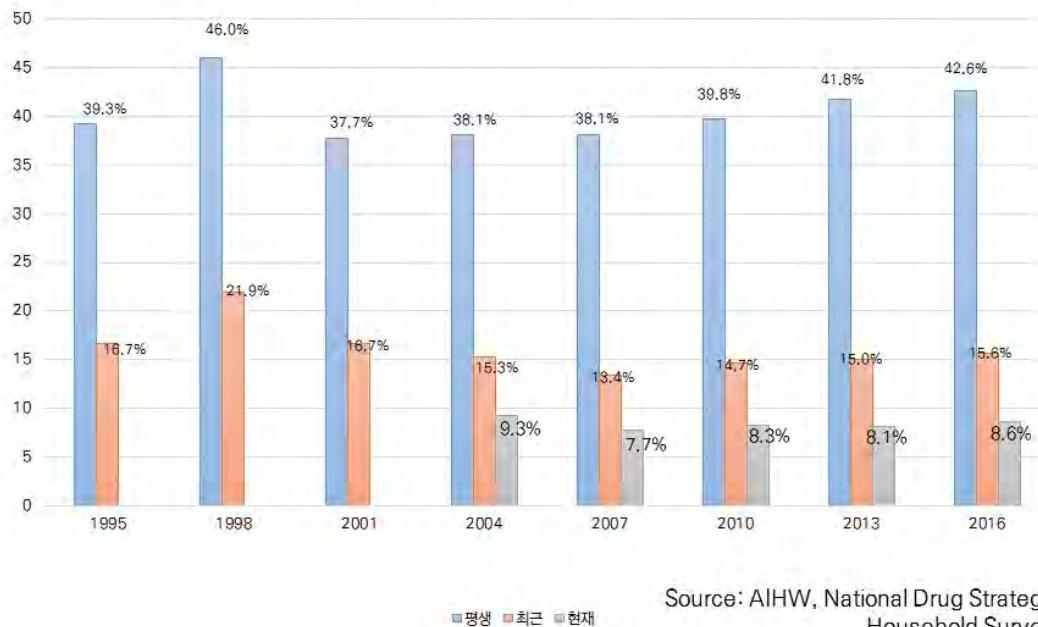


연도별 마약류사범(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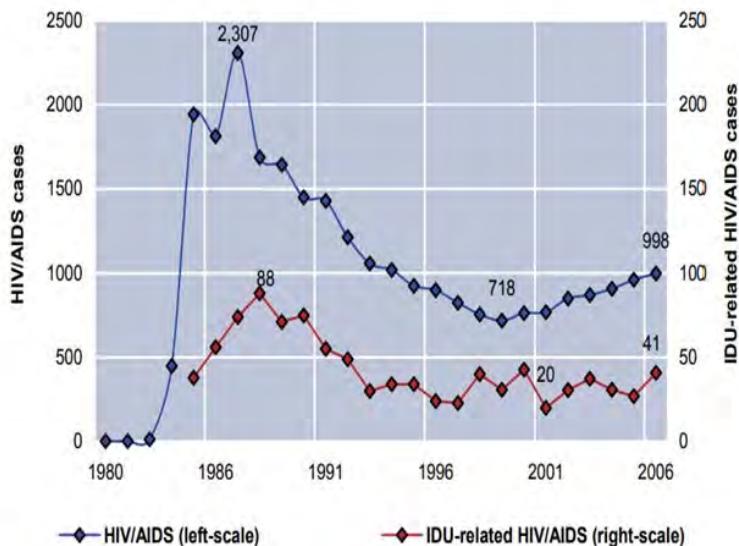
Source: ACIC, Illicit Drug Data Report



14세 이상 인구의 불법 마약류 사용률



새롭게 진단된 HIV/AIDS 사례



Source: National Centre in HIV Epidemiology and Clinical Research, Australian HIV Public Access Dataset (June 2007) and National Centre in HIV Epidemiology and Clinical Research, HIV/AIDS, viral hepatitis and sexually transmissible infections in Australia, Annual Surveillance Report 2007.

종합

- 마약정책을 급격히 변화시켰다고 인식하는 것이 마약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악화된 마약류 문제는 계속 악순환.
- 공급차단과 수요억제의 균형 잡힌 마약정책과 전략 필요
- 특히 수요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강화 필요

제언

- 마약류 문제를 검토, 평가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집단의 회의 체 구성 운영 필요 : 사회 환경 조성에도 기여
 - 급격한 마약정책 변화로의 인식은 마약류 문제를 계속 악화시킬 뿐.
 -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대책 마련 필요
- 공급차단과 수요억제의 균형 잡힌 마약정책과 전략 필요
 - 특히 예방, 치료, 사회복지활동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무의미
 - 수요억제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개선



Thanks



III

지정토론

좌장 약력

성명	권준수	
소속	서울대학교 정신과학/뇌인지과학과	
1. 학력		
기간	학교명	전공 및 학위
1978~198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1986~1988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
1991~1994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신과학	박사
2. 주요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직책
2019~2020	대한뇌기능매핑학회	회장
2018~2019	대한신경정신의학과	이사장
2011~현재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뇌인지과학과	교수
2010~현재	서울대학교 인간행동과학연구소	소장
1994~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

토론자 약력

성명	박 영 덕	
소속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 학력		
기간	학교명	전공 및 학위
~2010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	목회연구원 과정
2. 주요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직책
2018~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지도 실장
2017~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기소유예 대상자 담당 및 강사
2015~현재	중독상담학교	강사
2014~현재	한국마약중독복지협회	이사
2003~현재	보호관찰소 마약 예방교육	강사
2003~현재	전국교도소 마약예방 교육	강사
2003~2014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사
2003~2009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입소자시설	생활지도사

토론문 국내 마약류 사용의 실태와 대책

•••

박 영 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지도실장(회복자)

□ 국내 마약류는 현재 외국에서 오래전에 사용했던 마약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투약하고 있음

1. 한국에는 다문화 시대가 열리고 나서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마약이 협소하게 유통되고 있음
2.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나서 외국문화 길들여져 마약 사용이 우리나라에 범죄인줄 알면서도 마약을 비밀리 사용 투약하고 있음
3. 마약 투약뿐 아니라 범죄로 악용하고 있음
4.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됨

□ SNS으로 통하는 마약

1. 과거의 마약투약자와 현재의 투약자는 전혀 다름
 - 과거에는 상선, 하선, 선후배 등 특정선을 통해 약이 유통되고 투약방법 등이 공유가 되었는데, 지금은 약은 SNS로 숨어서 사고 약도 인터넷으로 배워서 혼자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양을 조절하지 못하고 투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임.
2. 채팅 어플을 통해 마약 중독자 확산
 - 일반 채팅을 통해 대상자를 만나면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며 마약을 같이 하게 되는 일도 많아짐
3. 동성애자 마약 투약자& AIDS 환자 많아졌음
 - 지금은 더 은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투약을 하다 보니, 동성모임에서 많이 유통되고 에이즈 감염으로 이어지는 남성들이 많이 생기고 있음
 - 이들은 마약, 동성, 에이즈라는 한가지로도 힘든상황을 동시에 겪고 있어 자살충동과 삶에 대한 포기상태로 살아가고 있어 약물중독의 문제로만 볼수 없다. 곧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것임

□ 마약사범들 사회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

1. 집행유예 대상자 사례관리 (보호관찰소 집중관리 부족)

- 이미 많은 마약사범들은 보호관찰 기간 중 소변검사를 피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공유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현재의 보호관찰시스템으로는 한계점이 존재
- 불시에 검사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면서 민간재활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회복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사회 복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
- 보호관찰 대상자일 때가 더욱 깊은 중독으로 빠지기 전 마지막 기회가 될 것(보호관찰 중 무사고 운전을 한 사람들은 언제든 안 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2. 교정시설 사회 재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부족과 네트워크 안내 부실

- 교정시설 수감은 법적 처벌로 어쩔 수 없는 국내현실이다. 하지만 출소 이후에 최대한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사회 복귀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함
- 해외 선진국들은 모두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이 마약류중독에 불감증을 갖고 있는지 경험자로 이해할 수 없으며, 여기 계신 각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노력을 지속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음

3. 치료보호 복지부 형식적 병원 안내 예산부족

- 숨어서 지내던 중독자들이 인생의 끝을 보고, 이제는 회복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오는 곳이 저희 중독재활센터이나 오랜 중독으로 몸은 망가질대로 망가져서 병원치료가 급선무인 사람들도 많음
- 이런 점에서 한국의 치료재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치료보호제도로 전국 21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 갈곳은 2-3곳 정도
- 그마저도 예산부족으로 본인부담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치료도 받지 못 하는게 현실이며, 요즘은 입원은 받지 않고 외래진료만 가능한 상황
-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수십개의 병원보다 마약중독자 전담치료병원 1곳을 설치하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함

*** 위 사항들은 본인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느끼는 상황임

토론자 약력

성명	박진실	
소속	법률사무소 진실	
1. 학력		
기간	학교명	전공 및 학위
1989~199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2010~2012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석사
2013~2015	중앙대학교 법학과	박사
2. 주요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직책
2018~현재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
2018~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겸임교수
2017~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
2004~현재	법률사무소 진실	대표변호사
2000	사법시험합격	

토론문

출소를 앞둔 마약사범에 대한 재범방지대책

•••

박 진 실
법률사무소 진실 대표변호사

마약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님. 형기를 마치고 나간다고 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현실을 본다면 좀 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마약류 사용사범의 경우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는 강제적으로 단약을 할 수 밖에 없으나 구금 중 마약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출소를 하는 경우 다시 재범에 이르게 됨.

그 결과 현재 마약사범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향정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40%에 이르고 있고 또한 출소후 3년 이내 다시 마약사범으로 재복역하게 되는 비율이 일반 형사사범에 비해 2배정도인 40%정도임.

한편 마약사범에 대한 수형기간동안의 치료재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 마약사범이 아닌 일부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이수받은 수형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재범률이 낮아졌다는 통계도 있음

수형시설에 있는 동안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한 상태에서 치료재활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면 분명 그 어떤 단계보다 치료효과가 극대화 될 것임. 더욱이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잘 이수한 수형자들의 경우 가석방이라는 조속한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단약의 동기강화 및 성실한 수형생활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많은 마약사범들이 재범을 하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현실 도피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재범에 이르게 되므로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부분 안정적인 사회 적응에 장애요소가 됨. 또한 많은 전과자들의 경우 낙인으로 인하여 재취업이 어려운데 마약사범에 대한 시선은 더욱 취업에 제한이 많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출소 전 취업교육등 사회 적응교육과 더불어 치료교육에 집중함으로써 재범률을 감소시킬 수 있음. 위와 같은 현실이 가석방과 출소전 적응교육이 필요한 이유임

특히 가석방을 함에 있어 치료보호를 부과하는 것뿐 아니라 중간처우의 집(half way house)과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과 재능기부자들을 활용함으로써 사회내 연계가 이루어지고 적극적인 치료재활교육을 확대하고 있음.

인식개선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시설을 만들어 중독 문제를 해결해 갈 때임. 우리의 경우에도 마약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을 활용함으로써 치료와 재활의 골든타임으로 만들어 가야함.

토론자 약력

성명	윤정식	
소속	JTBC	
1. 학력		
기간	학교명	전공 및 학위
1996~2003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학사
2005~2006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2. 주요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직책
2013~현재	JTBC	탐사보도팀장
2007~2012	헤럴드경제	경제부 기자
2003~2006	제주문화방송	사회부 기자

토론자 약력

성명	윤 흥희	
소속	서울북부지검형사조정위원. 한국행정개혁학회 마약정책위원장	
1. 학력		
기간	학교명	전공 및 학위
1989~1992	서경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2002~2004	한성대 행정, 국제대학원	국제마약범죄학 석사
2014~2015	국제마약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2005~2008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2. 주요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직책
2017~2018	호서대 경찰행정학과	범죄학·과학수사론 시간강사
2015~2017	고려대평생교육원 약물중독재활 최고위과정	전임 강사
2015~2017	서경대 법학과	시간 강사
2004~2016	경찰교육원 간부호보생	마약범죄 수사외래교수
2004~2008	경대, 경찰수사연수원	마약류범죄수사 외래교수
2005~현재	한성대행정대학원	마약 외래교수
2000~현재	한국약물예방교육개발원	교 수
1980~2016	서울지방경찰청마약수사대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천안경찰서)	경정대우, 마약, 지능, 강력 팀장, 소장, 계장

토론문

국내 마약류 사용의 실태와 대책 (공급차단 및 수요 감소)

•••

윤 흥 희

前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팀장

1. 서설

21세기 국제화 시대의 개방과 정보화 산업화의 환경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급격하게 사회의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 국내에서는 마약류 확산과 남용에 의한 재범, 상습투약으로 범죄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 증가 되고 있다. 이러한 마약류 사범의 증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 통제 비용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범죄억제와 재사회화는 향후 국가 마약류 확산통제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지난 수세기동안 인류 사회는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왔다. 우리나라 역시 일찍이 마약류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로 마약류범죄자 엄벌과 공급차단을 통해 마약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으며, 어느 정도 청정국가의 면모를 지켜 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1999년 이후 국내 마약류 생산 및 공급조직을 철저히 단속결과 2003년을 분기점으로 마약류 범죄자 수가 6,000명~7,000명 수준으로 감소 현상이 보이 듯 하더니 2013년 9,764명년부터 다시 급속도록 마약류 판매 및 투약자가 증가하면서 2015년도 마약사범, 1,153명, 향정사범, 9,624명, 대마사범, 1,139명으로 즐거되었다. 그러나 2017년도 14,123명을 상회 하면서 마약류 중독자의 환각상태에 의한 2차 강력범죄 발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복용자는 30만~50만 명으로 추산하면서 그에 따라 마약류 투약 사용사범의 수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공급정책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으로 수요와 중독자의 확산 통제 및 예방정책을 전개할 필요성에 대해, 관심 부족으로 정부와 자치단체, 관련기관 등이 국내마약류 수요 공급차단 정책이 미미한 정책으로 가고 있어 큰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없다는 현상으로, 최근에는 마약류 취급자 의사, 간호사, 병원 종사자들 까지 사용, 보관중인 마약류 프로포폴 등 치료용 마약류를 허위 기재하고 투약사례가 확산에 편승하고 있

으며 또한 마약류 도난 및 분실, 마약류 보관 규정 위반 사례 까지 등장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재범자, 수감자 교도소 내의 마약사범 치료·재활은 예산 등 의 문제로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국가차원, 지방자치단체, 의약 NGO 단체 등의 활동과 언론, 시민들 까지 마약류 범죄 확산 대책에 관여 하여야, 중독자의 정신적 사범 범죄는 감소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투약자 스스로 치료기관인 국립정신병원, 개인병원, 동네의원 등에서 자발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며, 마약류 공급 판매 유사 영업장소 영업자에 대한 마약류관련 법률 등 예방 홍보 등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책을 실현 할 수 없다. 국내의 마약 확산지역인 신촌, 이태원, 강남지역에서는 청소년 들이 얼마든지, 마약의 클럽, 유흥가, 은어를 통해 인터넷, SNS,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외 직구 통해 언제 어디 에서나 음료수, 커피 등 간편하게 다양 방법으로 투약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사용자 사범은 1년 1만 명 이상 검거 비율에 따라 증가하는 현상으로,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확산되는 사범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회질서 유지와 피해자적 피의자의 신체 건강유지, 사회복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여려 정책 중 공급차단과 소요감소 관련 수사기관의 방안을 제시 토론하고자 한다.

2. 마약류의 정의

마약은 한자로 ‘麻藥’이라고 쓴다. 흔히 이 ‘삼 마(麻)’ 자를 ‘마비 마(麻)’자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언어이다. (한문에서는 집안에서 삼 껌질을 벗긴다는 뜻)

이 ‘삼 마’ 자를 쓰게 된 유래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삼을 대마(大麻)라고도 하는데 마비시킨다는 뜻도 있어서 이 자를 쓰게 된 것 같다. 대마에는 마취성분이 들어 있다. 영문으로는 마약을 ‘Narcotic’ 이라 하는데 희랍어 ‘Narcosis’에서 유래된 말로 역시 마비시킨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고유의미의 마약 ‘Narcotic’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하며 약리학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 주고 수면을 유도하는 마취 진통 작용이며 투약 중지 시 금단현상을 나타내는 물질로 앵속 아편, 코카잎 그 제재, 이에 유사한 약리작용과 중독 증상 있는 약물(Drug)을 가리킨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고유 의미의 마약뿐만 아니라 LSD,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신경안정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등을 포함하여 특별한 구분 없이 총괄하는 의미로 사용하여 왔으며, 현재는 마약류라는 용어를 2000년 1월 12일 법률개정을 통합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인 경각심을 주지시키는 한편, 통일된 시각의 마약류 대책을 추진하고 노력하여 국민 보건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마약과 약물은 마약이라는 의미로 특별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고 실제적인 구분도 모호하다. 그러나 이들을 엄격히 구분한다면 ‘Narcotic’은 마약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강하여 앵속 과실에서 추출되는 아편제제로서 마취 진통 작용을 갖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Drug’는 일반 약품과 마약으로 규제되지 않는 알코올, 담배, 커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약물이라는 의미가 광의로 해석된다.

195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

-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 상용하는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 약물사용 중단 시 불안, 초조, 현기증, 구토 등 신체적 고통증상(금단현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해악을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마약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통상 ‘Narcotic Drug’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신경정신의약제에서는 알콜, 기침약, 유해화학 물질 등을 포함하는 개념의 Substances라는 용어사용). 한편 ‘Substance’는 향정신성물질(Psychotropic Substances) 등 Drug 의미로 사용되나 Drug 외에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상의 환각 각성 효과를 갖는 부탄가스, 본드(톨루엔), 휘발성, 용제 등 약사법상 판매 허용된 규제대상인 염산날부핀, 텍스트로메트로판, 엑스정과 같은 의약품 및 화학약품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마약제조에 사용되는 초산, 염산 등 화학물질(Chemical Substances)에도 사용되고 있다.

3. 마약류 범죄 개념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범죄는 각성제, 억제제, 환각제, 마약, 대마초를 불법으로 흡연 등 투약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범죄이기도 하지만 투약으로 인한 자제력 상실에 의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에게 몰래 먹여 범죄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교사, 방조, 간접행위 등 포괄적인 행위 모두를 뜻한다.

수사상의 마약류에 대한 개념 규정에 입각한다면, 마약류 범죄란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마약류의 제조, 유통, 소지 및 사용으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마약류 범죄의 유형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향정신성 사범, 마약 사범, 대마 사범으로 구분되며, 유통 과정에 따라 비합법적인 차원에서의 유통 사범, 제조 사범, 소지·재배 사범, 사용 사범과 합법적인 차원에서의 의료행위 문란 및 약사들의 유통 질서 문란행위 등이 있으나 사범별 실태의 제 문제는 마약류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 마약류 범죄의 특성

1) 범죄의 점조직성 및 강력 범죄 원인

이러한 마약류 범죄의 특성으로 마약류는 음성적인 점조직범의 특성을 가진다. 특히 마약류를 공급하는 자들은 간첩조직에 비견될 정도로 노출되지 않는 점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들은 편면적·일방적 연락점선에 의해 마약류를 밀거래한다. 마약류를 거래하다가 검거되어도 차상선인 윗선이 파악되지 않는다. 수사관들이 공작수사를 차단하는 특이

한 물건 교부 및 대금결제 방법 또한 마찬가지다. 그리고 검거되더라도 허무인 또는 엉뚱한 사람을 주범으로 내세우며 밀거래 범죄에 가담한 공범자를 은폐시키고, 이러한 마약 범죄는 강력 범죄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2) 고도의 지능화

마약류 범죄는 전문적인 지능범의 특성을 가진다. 그들은 숙련된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고, 마약류의 순도나 약효를 구분할 수 있으며, 다양한 거래 선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범죄 중 밀매 범죄는 치밀하고 교묘한 범행 수법이 필요함에 따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자구책을 강화하는 등 그 범죄 수법이 지능적이다. 예를 들어 마약을 밀거래하는 장소·시간 선택에 있어서 접선시간 이전부터 관찰, 조망하여 제1, 제2 접선장소로 유인한다. 그리고 마약류를 운반할 때는 택배 등 고의가 없는 자를 활용하기도 한다.

3) 장비의 첨단화

마약류 범죄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각종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범행을 위장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살상용 총기류까지 소지하고 유사시에 대비하는 첨단 과학범의 특성을 가진다. 각종 현대장비 구비는 물론이고 고급 승용차, 무전기, 망원경, 고성능 도청기 또는 도청 방지기까지 활용한다. 국내에서는 고급승용차, 각종 흉기, 불법 가스총, 사재 폭파기구, 무전기, 등을 소지하고 거래 및 공급시 수사관과 대치한다.

4) 광역화 및 기동화

마약류 범죄는 원료의 수입·제조·판매·투약 등이 국제적 연계 하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국내에서는 전국적인 조직망에 의해 유통되는 광역범의 특성을 가진다. 특히 인접국가에서 제조 및 생산되면 어느 한 나라의 퇴치만으로는 근절이 어렵고 이러한 피해는 개인과 가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마약 투약으로 국민정신이 황폐화되면 국가사회의 경제, 교육, 문화 등 안보문제 이기도 하다.

5) 영리성 및 부유층 침투

마약류 범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 길이면 어떤 방법이든 어떤 대상이든 가리지 않고 거래하며, 특히 지난과거에 북한 탈북자 돈을 벌기위해 밀 반에 가담한 사실 있다. 또한 상습 투약자, 부유층 자녀 등이 사용 행위에 있어서는 정신적·육체적 의존성 때문에 투약을 반복하고, 판매행위에 있어서는 막대한 불법 이득의 유혹 때문에 범행을 반복하게 되는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마약류 공급자들에 교묘한 범죄행위에 의거 형성된 수요계층 투약자들은 마약류의 강한 신체적·정신적 내성, 의존성에 의거 밀매 범죄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6) 조직범죄화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 제조, 판매하기까지는 여러 폭력조직과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복합성의 특징을 가진다. 주요 마약류의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는 힘들어 범죄조직에 의하여 유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마약류 거래는 불법적으로 엄청난 규모로 행해지고 있으며 그 조직은 군대에 못지 않은 화력으로 중무장하고 국가의 법집행을 위협하는 요소로까지 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조직은 마약류 거래로 획득한 엄청난 규모의 부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범죄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마약류의 불법 거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그 유통 단계가 복잡하여 단독으로 행하기는 힘이 들기 때문에 생산에서 소비자의 손에 이르는 거래의 각 단계마다 범죄조직이 깊이 개입하고 있다.

5. 국내 마약류 범죄의 유형

국내 마약류 범죄 유형으로는 지형에 따라, 공항과 항만 해상을 통해, 밀·제조 범죄, 밀반입·수출, 운반, 보관, 투약 소지 범죄로 분류할 수 있다.

1) 불법제조 범죄

마약류 불법 제조 사범은 천연마약을 재외 한 향정정신성물질로 전문적인 화학적 지식에 의해 만들어진다. 원료를 구입하여 약품을 혼합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예컨대 우리나라의 전통 마약인 필로폰 관련하여, 왜 땀 섬, 산간 깊은 곳 등에 위장 간판, 수도권 왜진 곳 등에서 공해 방지 연구센터 등의 간판을 내걸고 공해방지에 필요한 화학약품을 개발하고 그곳에서 화재, 폭발사고를 내기도 한다. 현장에서 염산에페드린 에텔치오닐 파라리움, 황산, 염산액, 원료, 교반기, 여과병, 수소 발생기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들이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 불법 제조자들은 거의가 폭력 전과자들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이기 때문에 조직원을 동원하여 총기, 회칼 등으로 제조단계에서 생기는 장애요인에 대해 인명을 살상하기도 한다. 이들 조직은 기술자, 자금 제공자, 화공약품 제공자 등 여러 단계로 형성된 인맥이 지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조 현장에서 이들 범죄를 검거할 때 단속요원들에게 염산을 퍼붓고 공격하기도 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70년 국내에서 제조 일본 등 수출, 80년 일부 제조 책들이 중국으로 이동 시골 공가에서 제조 일본, 국내 밀 수출 하며, 일부 잔류한 제조책 들은 국내에서 99년 까지 소량 제조 하다가 수시기관 단속으로 조직적인 제조 책은 발견되지 않으나, 화학 관련 연구 교수 등 감기약, 마황에서 에페드린 이용한 제조자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2) 밀반입·밀수출 범죄

마약류의 불법 수출입은 주로 선박, 비행기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선박, 비행기의 입출항 이착륙을 감시, 세관·해양경찰서의 공무원에 의하여 단속된다. 그러나 매일 입출항·이착륙하는

불특정 다수의 각종 여객, 승무원을 상대로 마약을 밀수출입 여부를 이착륙하는 단계에서 적발한다는 자체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사범을 즉각 적발하는 데는 당초부터 특정 선박의 승무원 내지 여행객이 마약을 밀수출입 한다는 정보가 확보되어 그자에 대하여 즉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무원 내지 여객을 모두 밀수출입 범인으로 의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적당하지 않고 또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양경찰이나 관세청이 그 고유의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마약을 소지한 자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마약 수출의 양상도 종전의 휴대형식 외에 생활용품의 용기 등 은밀한 곳에 마약을 숨겨나가는 범죄 집단이다. 예컨대 미꾸라지를 수출하면서 그 용기의 중간부분을 땀질하고 그 사이에 마약을 은닉한다든가 자개농을 수출하면서 밑바닥에 마약을 깔아 넣고 그 밑에 은닉한다든가 맥주병의 술을 쏟아내고 그 속에 마약은 넣은 다음 교묘하게 뚜껑을 붙이는 방법 등으로 마약을 수출한다. 그러나 자개농, 용기, 술병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어 시간과 공간의 장애요인으로 단속이 어렵다.

마약류 밀매자 주위에는 공범자가 존재하는 것이 통례인바 수술의 실행을 실제 담당한 자는 공범자 중에서 비교적 낮은 지위에 있어 주범을 검거하더라도 소비자는 마약을 외국에 수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든가 가공인물이 시켜서 단지 심부름 한 것에 불과하다는 변명을 함으로써 법정형이 높은 수출 죄의 성립을 부인하면서 오직 종범의 자격만을 강조하기도 한다. 대규모 밀매사건에 있어서는 자금책, 구입책, 소매책, 중간책, 전화 담당책 등 여러 형태로 복수인들을 관여시키는 수법으로 구체적 사건처리에 있어 실무상 정범과 방조범 구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첫째, 중국산 메트암페타민 이외에도 남미 지역의 코카인, 중국 등 동남아 및 서남아 지역의 헤로인, 생아편, 대마초, 해쉬쉬 등 각종 마약류가 국내시장 개최 목적으로 밀반입되거나 미국 등 제3국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어 마약류 공급선이 국제화, 지능화, 다변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암페타민에 카페인 등을 혼합하여 정제형태로 가공한 값싼 마약류인 태국산 야바, 디아제팜, 중국산 펜플루라민, 암페프라몬이 대량으로 밀반입되어 비만 여성들에게 거래되고 있다.

둘째,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증가와 함께 이들에 의한 다양한 범죄 등 불법 행위 증가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초기 마약류 범죄 개입을 적극 대처하지 못할 경우 이웃 일본 등과 같이 1회 투약 분 암거래 소매상들이 야쿠자 등 폭력조직과 연계한 이란인들이 판매행위에 나서게 될 우려도 농후하다. 따라서 검찰은 이를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마약류 범죄 개입 증가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미군범죄 수사대(CID), 국내 DEA파견수사관 등과 공조하여 철저한 정보 수집, 지속적인 동태 감시 및 위장 거래 수사 등을 통한 단속활동 강화에 진력해야 할 범죄 집단이다.

셋째, 폭력조직이 마약류 유통 범죄를 장악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 국가들의 경우에는 범죄

조직 특히 총기 등으로 중무장까지 한 범죄조직에 의한 마약류 불법거래 행위는 부패 문제와 함께 마약 범죄조직에 협력하지 않거나 장애가 되는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들을 위협하고 사살하는 공권력 훼손문제로 이어지는 경우 전쟁을 방불케 하는 ‘마약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집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폭력조직이 본격적으로 조직 차원에서 마약류 거래를 장악 하려는 시도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조직폭력배가 단편적으로 마약류 범죄에 개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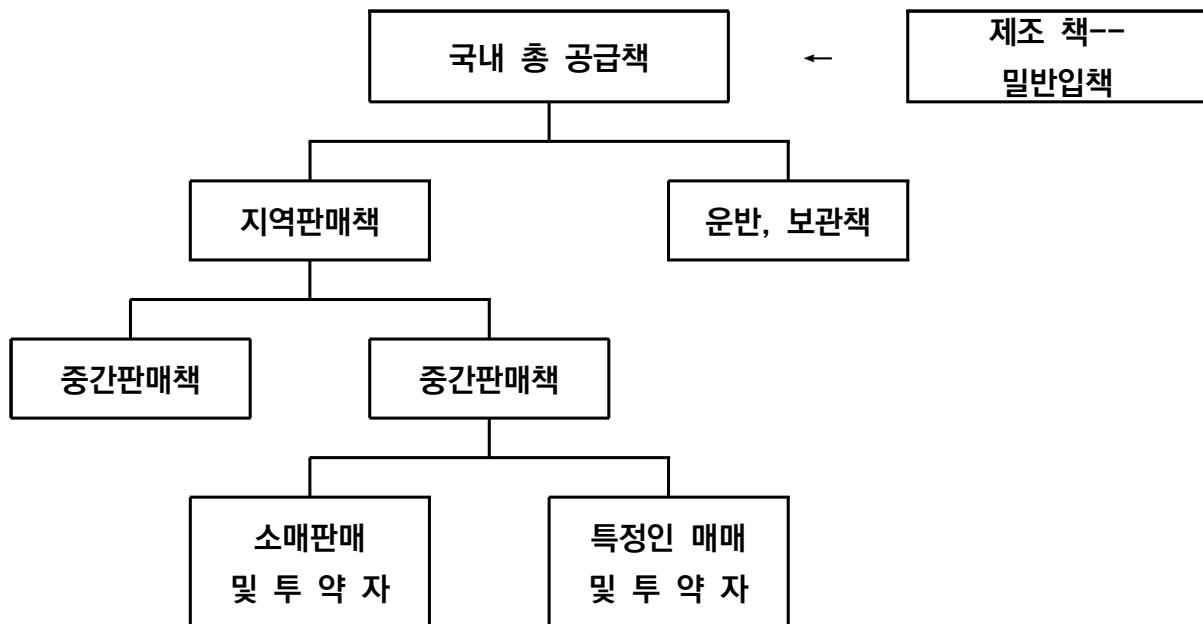
3) 소지 투약 범죄

우리나라는 전체 마약류 사범 중 학력별로, 초등학교에서 대졸,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횟수는 주 1회 27.3%, 3월 1회 10.3%, 월 1회 14.0%, 일 1회 13.8% 순으로 투약하고 있다. 대부분 1개월 이내 단기간 사용한 자이다. 그리고 2년 이상 장기간 상습자도 있다. 투약 장소로는 주로 가정집, 숙박업소, 오락실, 등 비교적 은밀한 장소를 이용하고, 거래 장소는 적발 시 도주하기 편리한 노상에서 주로 투약하고 있다. 이들 투약자들의 지역별 분포도도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순으로 그 범죄 빈도가 높고 농어촌은 물론이거니와 파급효과도 전국적이다.

첫째, 연령별 투약범죄 집단은 전체 마약류 투약사범 중 육체적, 정신적으로 체력이 왕성한 생산·근로계층인 20~40대가 79.9%를 차지하고 있고, 청·장년층이 여전히 중심 계층임이 반영되고, 마약류 사범 중 50대, 60세 이상이 1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들 연령층에 의한 양 귀비 밀 경작 사범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15세 미만자의 마약류 사범이 전무한 것은 마약류 가격이 비싸다는 등의 이유도 있지만 검찰, 유관기관의 청소년 상대 마약퇴치 홍보 및 계몽활동의 영향도 많은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마약류 사범 범죄 원인별 점유율은 호기심(24.6%), 유혹(23.0%), 중독(17.5%) 순이 대부분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범은 향정사범의 경우 18.7%를 점유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마약 및 대마사범(각 5.1%, 2.4%)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마약 사범은 다른 사범에 비해 치료 목적이 42.4%의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해서는 의료시설 등이 빈약한 시골이나 벽지에서 가정상비약으로 양귀비 밀 경작 사범들이 다수 입건된 것에 기인한다.

- 국내 마약류 공급 실태 계보도



6. 국내 마약류 범죄 확산에 따른 대책

1) 공급차단 정책

국내 마약류 공급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마약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자들로서 이들은 기존의 남용자들에게 계속 마약류를 공급함으로써 마약류의 사용 중단을 더 어렵게 하고 일반인에게 몰래 마약류를 희석한 음료수, 와인, 커피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새로운 사용자를 창출하거나 인터넷, SNS과 국제 우편,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등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바, 이들 불법 마약류 공급의 강력한 차단이야말로 불법 마약류 남용 억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어느 정도 감소 현상을 있으나 시대적 환경의 변화 국제화 개방 경제발전과 국민소득 향상,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자, 언어민 강사, 군인, 어학연수생, 국내 유학생, 여행자 등 원인이 의하여 2000년 이후 전동 마약류인 필로폰, 신종마약류 엑스타시, GH물통 년 14,000명에 이르는 등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과학적이고 더 강력하게 공급차단 정책을 시행 하여야 한다.

(1) 국내수사 및 관련기관 공조체제 실태

현재 국내 마약류 유관기관은 검찰, 경찰, 세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범죄사범에 대해, 강력한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의 효율적인 범죄첩보 및 정보교환과 수사 등 공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수사현장에서 유관기관

수사관들과 상호 공조체제 미숙으로 마약류 투약자로 오인 격투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공범과 상선수사에 정보누설, 공범도주 등 공조체제 미숙으로 더 많은 증거물 압수와 검거인원, 상선수사에 실패 사례가 발생된 사실이 있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같은 유관기관과의 업무 중복과 수사권 충돌로 인한 비협조 등 고비비용, 저효율이라는 마약사범 단속상 부작용과 실패 경험 사례를 우리는 보아 왔다. 그러한 공조체제가 마약수사에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현재 국내 마약류범죄 수사에 전념하고 있는 경찰청에서 전국적인 경찰관의 정보 활용과 경찰청 소속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수사요원 증원확대, 전문과 교육과 양성, 사이버수사요원, 국가정보원 해외정보, 인터폴 통한 정보와 공조가 이루질 때 국내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다.

(2) 국내공조수사

현재 국내에서 공조수사가 이루지고 있는 관련기관을 살펴보면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에서 검찰마약류 범죄 수사 총괄하며,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서 국내외 마약류 범죄동향 수집 및 전파, 제공, 관세청 조사사무국 국제조사팀에서 공항 항만 등으로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검역, 마약류 발견시 통제배달과 경찰의 마약류 밀반입 입수 수사시 수사공조협조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마약 분석과에서 소변, 모발, 마약류 등 감정 및 국내 유통마약류(신종, 임시지정약물) 성분 감정으로 원산지 추적 자료 제공으로 증거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관련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정국 마약류관리과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소관부서로 임시마약류지정 등 신종마약류지정과 원료물질 사용, 수입 허가, 약국 및 병원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마약류(의료용) 관리 감독한다. 특히 임시마약류지점에 있어 3~4개월에서 1개월 내 지정할 수 있어야 조기 수요차단 된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정보수사국 형사과에서 해상과 섬 등에서 마약류사범 단속과 마약류 해상 밀반입 첨보수사와 공조협조, 미국 DEA 수사관이 미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미국 등에서 밀반입하는 마약류수사 공조협조를 하고 있다. 그 외 민간단체로 한국마약퇴치운동부에서는 국내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 목적으로 설립 마약류의 유해성 홍보, 예방교육, 출소자 재활치료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 마약류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보면서 세계적인 미국의 마약단속기관 DEA같은 통합된 기관이 국내에서 필요성이 요구 되는 것이다.

* 미국 DEA 연방마약수사국, 법무부소속 독립마약류 수사기관으로 1973년 최초 설립, 미국전역에 21개부서와 221개 자국, 해외70개 국가에 91개의 해외지국을 두고 있으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세계경찰활동과 제조·밀수, 정책수립, 교육, 복지, 예산, 중독자, 재범자관리, 남용홍보, 마약류 유통 관리·관독, 정보수집관리, 국제공조 등 조직구성으로 약 특수수사관 4천명, 화학 전문가 등 마약류 범죄수사 대하여 직접 법관영장 발부받아 수사와 수색영장을 집행하여 검거활동을 한다.

(3) 국제공조수사

마약류 생산과 소비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원료물질이나 마약류의 완제품이 상

당 수사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마약류 범죄는 전형적인 국제범죄로 다른 강력 범죄와 다른 점은 외국 국제공조기관의 협력이 절실히 중요하다. 국제공조수사는 외교경로를 통해 공조수사와 인터폴을 통해 공조,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의한 형사사법공조수사와 범인인 인도법에 의한 마약사범인의 인도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 한 예로 직접적으로 인터폴을 통해 공조는 외교경로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인터폴 회원국들이 24시간 운영하는 인터폴 국제통신망을 이용하여 세계 전지역을 광범위하고 신속한 공조가 가능하다. 인터폴에서는 증거와 압수수색, 범인 인도, 타국과 수사관의 활동, 마약류에 대한 정보교환 및 예방, 국제마약사범에 대한 자료 수집 등 국내마약류 수사에 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또한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의한 공조로 소재수사 서류기록제공 송달 증거의 수집 압수수색검증 증거물 인도 검사의 신청에 대 검찰청 경위 법무장관에게 공조요청서 송부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 피요청국에 공조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공조수사의 단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대검찰청, 경찰청 주관으로 활발하게 국제공조수사가 과거 보다는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이며 그 예로, 아시아. 태평양마약정보조정센터, 국제협력회의 개최, 국제 마약퇴치지원사업, 베트남 마약통제역량 강화사업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공조 수사 시행을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적 예산지원이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제공조수사, 즉 국내에 밀반입되는 마약류 중 90% 이상이 중국산 마약류로 이에 대한 범정부차원에서 공조수사체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검찰에서는 한·중 마약대책협력체계 강화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로 마약류 밀반출 주요국인 중국, 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미국, 아·태지역 6개국과 Hot-line을 개설하여 24시간 국제공수사체제 구축하고 있다.

(4) 공항 항만의 감시체계 강화

공항 및 항만에 설치된 단속기관의 수사 분실 운영을 강화하고 새로운 마약류 탐지장비 등 과학적 장비를 보강하며, 현재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마약탐지견의 수를 늘려 국내에 밀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하여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2001. 3. 동북아시아의 중추 공항을 목표로 개항한 국제공항은 한달 동안 평균 하루 평균 297편의 항공기와 4,4270명의 여객을 처리하는 등 김포공항에 비해 여객 수가 57%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되는바. 신속한감시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통조직 전반에 걸친 집요하고 철저한 정보수집과 추적수사 등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국내 밀·제조와 밀매행위를 근절한다. 또한 마약류 제조·밀수 전과자 등에 대하여서는 출입국을 포함한 철저한 동태감시를 통해 강력 차단하여야 한다.

2018년 관세청 국제조사팀에서 마약류 660건, 426킬로그램 압수하고 특히 필로폰, 코카인 15건 72키로그램, 대마류는 309건에 59.9키로그램, 양귀비종자류 66건, 57.6키로그램, 엑스타시230건 9.3키로그램 압수와 대만 마약조직 죽련방 등 대만, 동남아 일대 중국계 마약조직이 우리나라 필로폰 암시장에 진출을 노린 밀수 시도가 증가원인이다. 미얀마 황금의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대량생산되고 한국, 일본, 호주 등 밀반입 되고 있다.

(5) 경찰 수사조직 및 요원 증원과 과학수사 확보

① 경찰 마약수사 역사와 수사요원 현황

국내 경찰의 마약류 수사는 행정자치부 소속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 경찰서 상대로 경찰국 수사국 형사과 마약계에서 전국의 마약류범죄수사 업무를 관장하고, 지방청 소속 마약수사대. 거점 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을 운영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는 국내 최대의 마약류범죄 수사기관이다.

치안본부(경찰청)은 1989.4. 전국 주요 시도의 경찰서에 마약수사전담요원을 지정사례가 마약수사의 시초로 볼 수 있다. 그 이후 마약류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1991.8. 경찰청이 발족함과 동시에 경찰청 형사국에 마약수사를 전담 관리하는 마약계를 신설한 것을 시작으로 경찰청 수사국 형사과 마약계 신설하여 경찰 역사 최초로 마약수사를 위한 본부 차원의 별도 직제를 두게 되었으며, 마약계는 시. 도의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마약전담반을 통괄하게 되었다. 경찰청 마약계가 신설되고 1992년6. 당시 외국의 마약류가 국내로 대량으로 밀반입되고 있는 실정에 맞추어 일선에 마약전담요원을 증원하였고 (백계 경찰서 312명) 마약류 상습 남용자가 각종 강력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토대로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마약류 상습 남용 여부를 가려내기 위하여 일선 경찰서에 마약류 간이검사 시약을 지급하여 소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3년도에 102개 경찰서 351명이던 마약수사요원을 259개 경찰서로 확대 996명으로 증원이 증가하며, 검거인원이 4,399명으로 큰 성과를 내게 되고 1994년 1,12. 범죄소탕작전 제2차 180일 작전을 선포 마약류 범죄를 단속하였다. 그러나 1997년 소위 IMF 사태로 불린 외환유기 이후 사업실패로 사회불안심리가 확산 마약류 범죄가 급속도록 확산 있으며, 중국 등 왕래하면서 “보따리 장사” 등이 큰돈을 벌 수 있는다는 혜영심에 휴대폰 안에 은닉 밀반입하고, 해외 유학생 증가로 엑스타시, GHB 등의 신종마약류가 젊은 층 상대로 국내에 확산일로 변화였다. 그 후 90년대 말 부터는 마약류 사범이 더욱 증가세 전환 되었다. 2008.8 다시 마약수사과와 지능범죄수사과를 통합하여 마약지능 수사과로 재편 마약과 가는 폐지되어 과거와 같은 강력범죄수사과로 소속 이관과 일선 전담부서가 형사과로 소속 이관 강력범죄수사팀에서 마약류수사 겸하게 되었다. 2015년 마약수대가 광역수사대 소속으로 이관 마약계 조직개편과 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 축소 등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2019.4.8. 현재 지방청 17개청에 25개 팀에 152명과, 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 27개서 27개 팀과 123명 (비전담팀 마약담당 형사팀) 총 788명으로 총 1063명 조직구성 되어서 전국적 상대로 마약류 범죄수사에 임하고 있다, 그 외 국제범죄수사대, 등 국내 마약류 사범을 년 평균 8천명이상 검거하는 수사기관으로 자리잡는데 큰 기여를 하는데 국내 마약류 복용자 등 약 30만명으로 추산할 경우 3개 기관에서 년 3만명 이상 검거하여야 수요 공급차단 정책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5년간 경찰청 전국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마약류 사범	5,699	7,302	8,853	8,887	8,107
인터넷 사범	800(14.0%)	968(13.3%)	1,120(12.7%)	1,100(12.4%)	1,516(18.7%)
다크넷·가상통화			80	141	80

(경찰청 자료 재인용)

특히 확산되는 전통마약인 필로폰과 신종마약류, 임시마약류지정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397개 마약류와 의원, 병원, 약국, 원료물질 사용자, 재범자, 중독자 등 전반적인 마약류 관련 수사에 필요한 수사요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태이다.

② 문제점

첫째, 지휘관의 발령과 관심도에 따라 수시로 조직개편에 문제점으로 현장수사관들의 혼선, 전문성 결여의 문제점과(예. 마약수사대에서 광역수사대로) 수사요원 분산(지방청, 각지경경찰서 각각 다른 수사 활동)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전국의 마약관련 전문수사관 증원과 각지방청 수사요원과 각 지정 경찰서 마약수사요원을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로 통합운영 함으로 단일화된 마약수사대로 정보, 예산, 수사기획, 장비관리 등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때 확산된 마약류 차단에 기여 할 수 있다.

둘째, 경찰교육원에서는 마약류범죄 수사관의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1998년부터 ‘마약범죄전문수사과정’을 운영하면서 마약류범죄수사 교육실시하고 있으나 전문화 교육 결여에 대한 문제점으로 전문수사기관인 경찰수사연수원의 교육정책에서는 강의하는 전문성 없는 교수지도와 년2회 교육과, 3주 교육 시행을 2주로 교육을 단축 시켜는 실태를 보면서 형식적인 전문성이 결여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상대로 지역 유통업소 대표, 종사자, 청소년 출입 업소 등 상대로 마약류에 대한 유해성, 법규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분기별 교육 실시 마약류범죄 예방활동에 기여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 수사요원이 절대적으로 증원하여야 한다, 현재 39명 의 수사요원으로는 2015년 이후 전국상대 및 외국 등지에서 인터넷, SNS 등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대처에 불가능하다. 전문가 상대로 특별채용 마약수사대에 우선적으로 배치 모든 마약류 불법거래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변화되는 실태에 신속하게 배치되어야 하며, 그리고 외국인 마약류 판매와 유통, 밀반입으로 마약수사관 상대로 어학교육이 전무함으로 이에 따라 어학교육을 1개월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또한 한국에도 국내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미국의 마약수사청과 같은 수사 독립 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경찰청 소속 “한국마약범죄수사국” 설치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셋째, 마약수사대에서 1년 2회의 수사관들의 인사이동과, 10년 5년 동안 전문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경위로 승진 할 경우 타부서 발령으로 팀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마약수사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마약전문수사관을 명예 수사관으로 채용 다년간 마약류 범죄수사에 대한 경험, 정보, 수사 활동을 현 재직한 수사관들과 공조 등 활용할 경우 한국의 마약류 공급차단과 수요 감소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넷째, 수사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 경찰청에서는 국립과학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검출하는 간이시약 개발이 시급하다. 임시마약류 지정 마약에 대하여 감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발이나 소변에 대하여 중요 마약류에 대하여 감정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조기 공범, 상선수사에 기여하여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마약견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도시 지방경찰청에도 마약견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류범죄수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장거래금, 수사활동비 현실화에 이루어 져야 한다. (마약수사비 연간 4억원 예산 책정) 위장거래금, 수사 활동비 부족으로 더 큰 사범을 겪거치 못한 사례 있다. 그리고 경찰청 전국의 마약류영상정보시스템 1996년부터 마약류 사범에 대한 범죄수법, 00사항과 사진, 범죄사실, 00수범, 마약류사범에 대한 조직계보도, 필로폰에 대한 지문, 등을 입력 활용하여 전산망에 전국적으로 축적된 정보를 마약류 범죄 수사하는 수사관이 열람하는 컴퓨터 단말기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 하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며, 구식의 장비에서 디지털 감청장비, 고성능 워키토키, 도청기, 마약 간이테스기 등 현대적 장비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마약류에 의한 불법수익자산 철저 추적 집행이 미미함으로 철저한 합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야 하며, 자금세탁과 비트코인 등에 대한 전문가 특별채용 불법수익자산을 추적으로 수요차단에 대처하여야 한다.

7. 소요감소 정책

국내 불법 마약류의 수요자는 범죄자인 동시에 마약류에 중독되어 스스로 의지로는 중단하기 어렵고, 마약류를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금단증상이나 의존성·내성, 환각 등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이다. 따라서 수요자에 대하여서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범죄자 아니 피해자 내지 환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요자 형사처벌 보다는 치료와 단순 투약자에 대한 기소유예제도,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 등 여러 가지 법률적 차원에서 처벌정책 보다는 치료 재활정책으로 과감하게 시행하여 수요자 대한 재범 방지 등 효과와 효율적인 수요 감소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수요자에 대한 수요 감소 정책으로 청소년, 유흥업소종사자, 업주 대표, 마약거래 가능한 업소 상대로 분기별 지방자치단체 구청, 경찰서 등에서 마약류에 대한 유해성과 치벌법규에 대한 교육 실시로 인하여 공급차단과 수요 감소의 정책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교육정책강화

국내 마약류 실태를 보면 전통마약류 필로폰과 젊은 층이 사용하고 있는 신종 마약류는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 신종마약류 수요자 상대로 마약에 대한 유해성 강력한 처벌주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마약류 사용이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인터넷 매수나 판매, 처방 없이 사용하는 것의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정부의 기관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에서 초중고 학생상대로 학생흡연, 음주 등 약물예방교육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기획홍보팀에서 마약류폐해 예방보호, 교육, 마약류중독자 재활지정(송천재활센터 운영) 정책으로 시행하며,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모든 학교에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맡는 보건교사를 둬야한다. 의무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초중·고 학생에 대한 약물교육은 보건 교사를 통해 형식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과, 비행청소년 상대의 약물교육을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성인에 대한 교육도 부족한 현실이다. 그에 따라 외국사례를 비교하여보면서 국내 정책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한다.

첫째, 미국의 정책에서 국가마약통제를 위한 전략 목표를 보면 2년 목표로 12~17세와 18세 이상 실시하고 5개년 목표에서는 12세~17세, 18세 이상 교육정책으로 마약사용률 25% 감소 나타나고 있다. 그 내용으로 공급감소전략과 수요감소 전략으로 진행, 공급감소에 초점을 맞추면서 부분적으로 수요감소정책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그에 따라 학교교육과 지역사회 예방, 치료자원 제공, 판매자 제거, 학생들의 마약검사 학교지원 예산증액과 청소년 마약예방캠페인 활동 지원 마약사용에 대한 조기개입 중점으로 실행 확산 방지 하고 있다.(2007. 김민석)

둘째, 일본으로 필로폰 생산국에서 마약류 확산에 안정된 국가로 평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5개년 전략으로 엄벌주의, 수요근절, 국민의 합의에 의한 정책으로 첫째 중·고생 중심으로 약물 사용의 위험성의 계몽과 초등학생들까지도 계몽 청소년 약물 근절을 목표로 한다. 마약류 제조자 판매자가 까지 강력 단속, 밀수를 해안·공항 완전차단과 제조지역 국제공조 차단을 실시한다. 학교교육에서는 약물활용방지교육 지도의 충실, 유직, 무직소년에 대한 교육, 계몽기획의 확보 지역에 약물사용방지교육 실시, 홍보 약물근절 의식의 향상, 관계기관 상담, 노상보도 홍보, 의사, 수사기관 도도부현지사 의한 강제입원(성인중독자) 등 국민의 합의를 얻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인식 강조하였다.

셋째. 영국에서는 청소년, 부모 그리고 술, 담배, 흡입제 등 마약류 남용에 대한 위험한 결과를 제공한다. 또래 압력에 저항하는 기술 등을 5세부터 교육실시 한다. 그리고 위험한 청소년에게 적절한 특별교육 실시하고, 5세~16세의 청소년들의 마약류 남용의 위험과 결과에 대한 지식에 교육, 청소년 남용에 대한 질적 조사와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장기간 평가와 효과적인 예방교육 실시 등 마약관련 반사회적 범죄행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한다. 그리고 마약

문제자가 마약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범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다.

넷째. 호주에서는 본건, 법, 시행, 교육 기관사이 파트너쉽 증진, 균형 잡힌 접근이다. 우선 하위목표는 예방과 공급 감소 약물사용과 관련 양질의 치료에 접근향상, 관련 인력과 조직개발 등이다. 지역사회에서 알코올, 담배, 물질 효과적 법대처수행과 공교육 캠페인 신뢰할 수 있는 대중매체 보고, 약물사용 감소하는 것을 지원 격려하는 주요 서비스 공급, 공공시설 확대 약물에 대한 감소 프로그램운영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치료 재활 접근성 시사점에 국내에서도 수요 감소를 위한 교육정책이 양질의 질적으로 실현 될 때 마약류 사용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2007.김민석).

2) 홍보와 예방활동 강화

홍보에 있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수사기관 등 마약에 대한 홍보체제 등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매년 6월26일 행사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그리고 마약류에 대한 합법적인 것을 가장해 유통될 수 있다는 특성 등으로 인해 투약자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교육이나 홍보가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은 마약류 사용시 지각하지 못했던 사례가 실무를 통해 알 수 있었고, 성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필로폰, 신종마약 등 최초 투약사용 할 경우 유해성에 대하여 지각하지 못했던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어 신종마약류, 임시마약류지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중요하다. 그 예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사용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홍보와 교육, 대다수 의사의 처방에 약사가 판매하는데 대다수 약국에서는 안면 등으로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있으며, 환각을 위해 여기저기 약국에서 매수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료용 향정성의약품 위해성에 대하여 철저한 홍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검찰청 등의 사이트에서 마약류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일반인이 알기 쉽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중매체 등을 통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정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홍보용 포스터, 지역 반상회와 지역신문사에 게재. TV, 홍보와 새로운 신종마약류에 대한 과학적 평과를 근거로 부정적 영향에 대해 대중매체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청에서는 양귀비 생산시기와 필로폰 투약시기 년 2회 자수기간 설정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이루어 져야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구청) 관할 유흥접객업소, 유흥가, 청소년 출입장 상대로 포스터, 표어·팜플렛 등 교육과 홍보차원에서 책자 제작 지급하여야 한다. 관세청에서는 공항 항만 내실에 마약류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실내방송, 공항 내 홍보용 포스터, 표어, 한국의 업별정책 등을 알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8. 향후 대책 방향

-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공조체제 확립, 시·군·구청, 경찰서 관내 유통업소와 청소년 대상 업소 분기별 마약류 관련 교육 실시, 초·중고, 대학 교육기관에서 전문가 상대로 교육과 과목지정 교육실시, 성인상대로 정신양원과 병원등에서 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2) 단속기관의 수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검찰, 인터넷 등 총괄적 공조체제 유지와 정보제고, 경찰, 전국 경찰요원 정보화 활용 점조직 마약류 사범에 대한 검거와 전문가 수사요원 교육실행 및 독립된 마약범죄수사국 창설, 세관, 공항 항만 정보 등 공조와 입국자 와 특송화물, 국제우편 철저 감시 등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체제를 강화 제정비하여 마약류범죄 사범에 대한 전문화된 수사역량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여야 하고, 특히 전문수사요원 증원과 사이버수사요원 증원 양성과 첨단 추적 수사장비 확보, 정보전산화 및 과학적인, 감식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과학적 수사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며, 특히 신종 향정신성물질과 신속한 임시 마약류 지정, 신종마약류 감정이 필요하다.
- 3) 경찰 조직의 재편, 전국의 마약수사 정책에서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국 창설과 경찰서 마약 범죄수사팀의 인원을 지방경찰청으로 이관 마약수사대 수사요원 증원, 사이버수사요원, 자금추적, 정책 홍보 요원 증원 확보 대책과 첨단수사장비 확보, 마약류수사 유장거래자금 추적수사와 마약수사요원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실시 등 실행하며, 정부의 마약수사요원 수사활동비 현실화로 인상, 예산지원 강구 등 전문수사관으로 정착 수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4) 마약류사범에 대한 관리정책과 재활치료 정책으로 병행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조직계보도, 필로폰 지문활용과, 밀반입, 밀제조, 밀매에 대하여 지속적 단속을 하여야 한다.
- 5) 국제적 마약류 유통체계로 생산--운송--소비--재투자 이라는 순환을 거쳐 확산 재산 되고 있다. 이러한 유통구조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관련기관, 협력기관, 민관단체, 시민 등으로 협의체 구성, “공급감소, 운송차단 수요감소, 재투자 차단”의 네 가지 정책을 철저한 실행이 있어야 21세기 한국마약류 범죄 확산 예방대책에 기여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경찰청.(2017) 경찰백서.
- 경찰청.(2015) 마약류 범죄수사의 이해
- 김민석.(2007). 외국의 마약류 중독관리 정책 현황 정책포럼
- 대검찰청.(2017). 마약류범죄백서
- 법무연수원.(2003). 마약수사능력개발반, 전문교육과정
- 윤흥희.외,(2005). 형사특별법. 서울: 법률정보센터
- 윤흥희.외,(2008) 마약류범죄수사 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한성대학교박사학위논문)
- 형사형사정책연구원.(2017). 신종마약류범죄 발생실태와 통제정책

토론자 약력

성명	조근호	
소속	국립정신건강센터	
1. 학력		
기간	학교명	전공 및 학위
1988~1994	중앙대학교 의학과	학사
1994~2000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
2003~2006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사
2. 주요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직책
2016~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4급)
2011~2015	다사랑중앙병원	연구원장
2007~2011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조교수
2003~2003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신과 전임강사

토론자 약력

성명	조의연	
소속	서울북부지방법원	
1. 학력		
기간	학교명	전공 및 학위
1985~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89~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2. 주요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직책
2019~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2018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
2002~2003	캐나다 브리티시콜럼비아대학	Visiting scholar
1998 이후	판사로 임관하여 각급 법원에서 근무	판사 및 부장판사
1995~1998	해군법무관	
1993~1995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1992	제34회 사법시험,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토론문

•••

조의연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가.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의 동향

- 마약류(대마, 마약, 향정) 신종 물질의 급격한 유입, 확산
 - 촘촘한 그물망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벌 근거의 공백 상황이 발생할 소지도 있음
- 첨단 방식에 의한 유통
 - 해외직구 유행, 다크웹에 마약류 매매 사이트 개설, 신종 SNS 기법(GPG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비밀대화, 암호화폐로 거래대금 결제, 드롭 방식의 배송 등
- “(새로운)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다양해진 소비층이 ‘공급사슬의 진화’를 촉발하는 형국
 - 소비자의 약물 의존성 심화 및 공급자의 IT 기술 활용이 그 배경이 되고 있음
- 법원에서도 공급 범죄 사건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 특히 마약류 수입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나. 마약류 범죄 재판의 특징

- 가장 정형적인 사건 유형 중 하나
 - 처벌규정 및 양형기준이 대상 물질과 행위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양향인자들이 대부분 명료하여 해석·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거의 없음
 - 실무상 동종 전과, 수사 협조가 가장 흔히 고려되는 양향인자임
 - 수요자 범죄(투약, 단순소지 등)에서 치료, 재활 관련 양향인자는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가 유일함
- 재판실무에서 여타 범죄 사건과의 차별성은 미약한 상황
 - 대체로 형사사법의 전통적 가치인 양형의 균등성, 예측가능성에 충실한 재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마약류 사범(수요자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처우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음

다. 현행 법제도 및 재판실무의 한계와 개선 방향

○ 치료지향적 처우 수단의 부족

- 2017. 1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마약류 등으로 인한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사회내 처우 수단으로 치료명령이 신설됨
- 그러나 치료명령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판결 선고시에만 보고관찰과 함께 부과할 수 있어, ① 실형이나 별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택할 수 없고, ② 판결 선고 이전 단계(양형심리 절차)에서 범죄 및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치료를 위한 맞춤형 처우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 마약류 중독자를 어떤 프레임으로 볼 것인가?

- sin model vs disease model
- 습벽(상습성) vs 질병(심신장애)
- 재범(re-offense) vs 재발(relapse)
- risk(재범 위험성; 예후) vs need(치료 필요성; 진단)

○ 법제도 및 실무운영 개선 방향

- ‘회전문 현상’ 등 형(별)의 실패 상황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는 자세가 긴요
- 법제도의 개선(형의 일부 집행유예, 치료보호사건 송치 제도 등 도입)에 앞서 현행법 하에서도 치료지향적 관점에서 재판실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예 : 치료조건부 보석, 법원 주도의 개별화된 양형조사 등]

○ 치료사법적 사고에 기반한 문제해결법원 도입 논의에서의 유의점

- 법원이 치료를 명하는 처분은 대상자의 특성(전과, 죄질 등)과 재판 진행단계에 따라 복수의 트랙을 설치하여 각기 다른 양형 수단을 사용할 것
- 새로운 치료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선 치료, 후 종국처분’의 구조를 지향할 것
- 법원과 의료기관, 지역사회, 민간전문가가 파트너십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법원은 지도 및 감독 기능에 중점을 둘 것
-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형벌권의 약화를 초래하는 것은 피하고, 양형의 균등성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할 것

라. 첨언 : “마약류 범죄, 더 멀리 보기”

- UNODC, WHO의 제언[Treatment and care for people with drug use disorders in contact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2018. 3.)]
 - 건강 패러다임을 채용하라 : 약물사용장애는 건강지향적 구조(health-oriented framework)에서 치료될 수 있다.

- 형사사법제도를 치료의 관문(gateway to treatment)으로 삼아라 : 형사사법제도는 약물을 관련 개입을 위한 중요한 설정이다.
- 약물사용장애로부터의 회복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수용하라 : 약물사용장애는 재발하기 쉬운 상태(relapsing conditions)이다.
- 치료를 다양화하라 : 약물사용장애를 가진 모든 범죄자들이 (동일한 강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유죄판결이나 처벌에 대한 대안은 국제규범 체계와 일치한다.
- 다이버전 기회에 초점을 맞춰라.
- 파트너십을 창출하라 : 형사사법제도와 치료서비스는 적절한 역할 정의와 상대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통해 함께 갈 수 있고, 또 함께 가야 한다.
- 자극적인 환경을 제공하라.

○ Miami-Dade County Drug Court 방문 소감

- substance abuse /drug addition
- diversion from the ordinary prosecution
- a treatment program overseen by a court
- paradigm shift in courtroom procedures

○ 북한의 마약 문제

토론자 약력

성명	천기홍	
소속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1. 학력		
기간	학교명	전공 및 학위
1991~1997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2. 주요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직책
2018~현재	대검찰청	마약과장
2017~2018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부장
2017.2.~2017.8.	대전지검	형사3부 검사
2015~2017	대검찰청	강력부 검찰연구관
2012~2015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
2009~2012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

토론자 약력

성명	천영훈	
소속	인천 참사랑병원	
1. 학력		
기간	학교명	전공 및 학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원광대대학과 의과대학	학사 석사
2. 주요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직책
현재	인천참사랑병원 인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인천 정신보건사업단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한국정신의료기관협회	병원장 센터장 중독분과 위원 평생회원 및 마약특임이사 이사

한림원탁토론회는...

•••

한림원탁토론회는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세우고, 동시에 과학기술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림원의 대표적인 정책토론행사입니다.

지난 1996년 처음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100여회에 걸쳐 초중등 과학교육, 문·이과 통합문제, 국가발전에 미치는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분야의 기본문제는 물론 정부출연연구소의 발전방안, 광우병의 진실, 방사능, 안전 방제 등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림원은 과학기술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현안문제 중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고, 과학기술 유관기관의 최고책임자들을 발제자로 초빙하여, 한림원 석학들을 비롯해 산·학·연·정의 전문가들이 심도 깊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론후에는 책자로 발간, 정부, 국회와 관련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입안자료를 제공하여 여론 형성에 기여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 한림원탁토론회 개최실적 (1996년 ~ 2019년) ■

회수	일자	주제	발제자
1	1996. 2. 22.	초중등 과학교육의 문제점	박승재
2	1996. 3. 20.	과학기술분야 고급인력의 수급문제	서정현
3	1996. 4. 30.	산업계의 연구개발 걸림돌은 무엇인가?	임효빈
4	1996. 5. 28.	과학기술 행정과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박우희
5	1996. 7. 9.	연구개발 평가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강계원

회수	일자	주제	발제자
6	1996. 10. 1.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김훈철
7	1996. 11. 4.	21세기 과학기술비전의 실현과 정치권의 역할	김인수
8	1997. 2. 25.	Made in Korea, 무엇이 문제인가?	채영복
9	1997. 4. 2.	산업기술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이진주
10	1997. 6. 13.	대학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장수영
11	1997. 7. 22.	대학원 과학기술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김정욱
12	1997. 10. 7.	과학기술 행정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김광웅
13	1998. 1. 22.	IMF, 경제위기 과학기술로 극복한다.	채영복
14	1998. 3. 13.	벤처기업의 활성화 방안	김호기, 김영대, 이인규, 박금일
15	1998. 5. 29.	국민의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강창희
16	1998. 6. 26.	정보화시대의 미래와 전망	배순훈
17	1998. 9. 25.	과학기술정책과 평가제도의 문제	박익수
18	1998. 10. 28.	경제발전 원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의 역할	김상하
19	1999. 2. 12.	21세기 농정개혁의 방향과 정책과제	김성훈
20	1999. 3. 26.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	이규성
21	1999. 5. 28.	과학기술의 새천년	서정욱
22	1999. 9. 10.	신 해양시대의 해양수산정책 발전방향	정상천
23	2000. 2. 10.	21세기 환경기술발전 정책방향	김명자
24	2000. 4. 14.	경제발전을 위한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역할	김각중

회수	일자	주제	발제자
25	2000. 6. 16.	과학·기술방전 장기 비전	임 관
26	2000. 9. 15.	국가 표준제도의 확립	김재관
27	2000. 12. 1.	국가 정보경쟁력의 잣대: 전자정부	이상희
28	2001. 5. 4	환경위기 극복과 지속가능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 기술개발전략	박원훈, 류순호, 문길주, 오종기, 한무영, 한정상
29	2001. 7. 18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미치는 기초과학의 영향	임관, 명효철, 장수영
30	2001. 9. 21	산업계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공학교육의 방향	임관, 한송엽
31	2001. 10. 31	적조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홍승룡, 김학균
32	2001. 12. 5	광우병과 대책	김용선, 한홍율
33	2002. 7. 19	첨단기술 (BT,ET,IT,NT)의 실현을 위한 산업화 대책	한문희, 이석한, 한송엽
34	2002. 9. 13	우리나라 쌀 산업의 위기와 대응	이정환, 김동철
35	2002. 11. 1	생명윤리 – 과학 그리고 법: 발전이냐 규제냐?	문신용, 이신영
36	2003. 3. 14	과학기술분야 졸업생의 전공과 직업의 연관성	조황희, 이만기
37	2003. 6. 18	국내 농축산물 검역현황과 발전방안	배상호
38	2003. 6. 27	대학과 출연연구소간 연구협력 및 분담	정명세
39	2003. 9. 26	그린에너지 기술과 발전 방향	손재익, 이재영, 홍성안
40	2004. 2. 20	미래 고령사회 대비 국가 과학기술 전략	오종남
41	2004. 10. 27	고유가시대의 원자력 이용	정근모
42	2004. 12. 7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국내 고추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박재복
43	2005. 9. 30	과학기술윤리	송상용, 황경식, 김환석

회수	일자	주제	발제자
44	2005. 11. 25	과학기술용어의 표준화 방안	지제근
45	2005. 12. 1	융합과학시대의 수학의 역할 및 수학교육의 방향	정근모, 최형인, 장준근
46	2005. 12. 15	해양바이오산업, 왜 중요한가?	김세권, 김동수
47	2006. 11. 7	첨단과학시대의 교과과정 개편방안	박승재
48	2006. 12. 22	과학기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 대책	설성수
49	2007. 6. 29	선진과학기술국가 가능한가? – Blue Ocean을 중심으로	김호기
50	2007. 11. 9	우리나라 수학 및 과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도한, 이덕환
51	2008. 5. 9	태안반도 유류사고의 원인과 교훈	하재주
52	2008. 5. 8	광우병과 쇠고기의 안전성	이영순
53	2008. 6. 4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의 국내외 발생양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김재홍
54	2008. 10. 8	High Risk, High Return R&D,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호기
55	2008. 11. 11	식량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이정환
56	2008. 12. 11	초중고 수학 과학교육 개선방안	홍국선
57	2008. 12. 17	우리나라 지진재해 저감 및 관리대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윤정방
58	2009. 2. 19	21세기 지식재산 비전과 실행 전략	김영민
59	2009. 3. 31	세계주요국의 나노관련 R&D 정책 및 전략분석과 우리의 대응전략	김대만
60	2009. 7. 20	국가 수자원 관리와 4대강	심명필
61	2009. 8. 28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및 정책 방향	송기찬, 전봉근
62	2009. 12. 16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이현구

회수	일자	주제	발제자
63	2010. 3. 18	과학도시와 기초과학 진흥	김중현
64	2010. 6. 11	지방과학기술진흥의 현황과 과제	정선양
65	2011. 2. 28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와 기초과학진흥	민동필, 이충희
66	2011. 4. 1	방사능 공포, 오해와 진실	기자회견
67	2012. 11. 30	융합과학/융합기술의 본질 및 연구방향과 국가의 지원시스템	이은규, 여인국
68	2013. 4. 17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 거는 기대와 희망	문정인
69	2013. 6. 11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식량정책 이대로 좋은가?	이철호
70	2013. 7. 9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원로의 역할과 의무	이원근
71	2013. 7. 22	대학입시 문·이과 통합, 핵심쟁점과 향후 과제는?	박재현
72	2014. 1. 17	국가안보 현안과제와 첨단과학기술	송대성
73	2014. 3. 4	융합과학기술의 미래 – 인재교육이 시작이다	강남준, 이진수
74	2014. 5. 9	과학기술연구의 새 지평 젠더혁신	이혜숙, 조경숙, 이숙경
75	2014. 5. 14	남북한 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생태통일 방안은?	김호진, 이돈구
76	2014. 5. 22	창조경제와 과학기술	이공래, 정선양
77	2014. 5. 29	재해·재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은?	이원호, 윤정방
78	2014. 6. 10	벼랑 끝에 선 과학·수학 교육	정진수, 배영찬
79	2014. 6. 14	문학과 과학, 그리고 창조경제	정종명, 최진호
80	2014. 6. 25	‘DMZ세계평화공원’과 남북과학기술협력	정선양, 이영순, 강동완
81	2014. 7. 24	국내 전통 발효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대안은?	신동화

회수	일자	주제	발제자
82	2014. 9. 17	‘과학기술입국의 꿈’을 살리는 길은?	손경한, 안화용
83	2014. 9. 30	한국 산업의 위기와 혁신체제의 전환	이근
84	2014. 11. 14	경제, 사회, 문화, 산업 인프라로서의 사물인터넷(IoT): 그 생태계의 실현 및 보안방안은?	김대영, 김용대
85	2014. 11. 28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과학기술의 나아갈 길은? 미래식품과 건강	권대영
86	2014. 12. 5	창발적 사고와 융합과학기술을 통한 글로벌 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	허석준, 이기원
87	2015. 2. 24	구제역·AI의 상재화: 정부는 이대로 방지할 것인가?	김재홍
88	2015. 4. 7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수학 수능개혁	이덕환, 권오현
89	2015. 6. 10	이공계 전문가 활용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이건우, 정영화
90	2015. 6. 25	남북 보건의료 협정과 통일 준비	신희영, 윤석준
91	2015. 7. 1	메르스 현황 및 종합대책	이종구
92	2015. 7. 3	‘정부 R&D 혁신방안’의 현황과 과제	윤현주
93	2015. 9. 14	정부 R&D예산 감축과 과학기술계의 과제	문길주
94	2015. 10. 23	사회통합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정선양, 송위진
95	2015. 11. 4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 농업 발전방안	이향기, 박수철, 곽상수
96	2015. 11. 9	유전자기위 기술의 명과 암	김진수
97	2015. 11. 27	고령화사회와 건강한 삶	박상철
98	2015. 12. 23	따뜻한 사회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국내외 적정기술을 중심으로	박원훈, 윤제용
99	2016. 2. 29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산업 혁신방안은?	이동수, 송일열, 유회준
100	2016. 4. 18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 50년의 도전과 대응	김도연

회수	일자	주제	발제자
101	2016. 5. 19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방지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김동술, 박기홍
102	2016. 6. 22	과학기술강국, 지역 혁신에서 답을 찾다	남경필, 송종국
103	2016. 7. 6	100세 건강과 장내 미생물 과학! 어디까지 왔나?	김건수, 배진우, 성문희
104	2016. 7. 22	로봇 기술과 미래	오준호
105	2016. 8. 29	융합, 융합교육 그리고 창의적 사고	김유신
106	2016. 9. 6	분노조절장애,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나?	김재원, 허태균
107	2016. 10. 13	과학기술과 미래인류	이광형, 백종현, 전경수
108	2016. 10. 25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젠더혁신의 역할	이우일, 이혜숙
109	2016. 11. 9	과학기술과 청년(부제: 청년 일자리의 현재와 미래)	이영무, 오세정
110	2017. 3. 8	반복되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류영수, 박최규
111	2017. 4. 26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혁신체계	김승조, 민경찬
112	2017. 8. 3	유전자교정 기술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김정훈
113	2017. 8. 8	탈원전 논란에 대한 과학자들의 토론	김경만, 이은철, 박홍준
114	2017. 8. 11	새롭게 도입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바란다	정선양, 안준모
115	2017. 8. 18	ICT 패러다임을 바꿀 양자통신, 양자컴퓨터의 부상	허준, 최병수, 김태현, 문성욱
116	2017. 8. 22	4차 산업혁명을 다시 생각한다	홍성욱, 이태억
117	2017. 9. 8	살충제 계란 사태로 본 식품안전관리 진단 및 대책	이향기, 김병훈
118	2017. 11. 17	미래 과학기술을 위한 정책입법 및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박형욱, 양승우, 최윤희

회수	일자	주제	발제자
119	2017. 11. 28	여성과기인 정책 업그레이드	민경찬, 김소영
120	2017. 12. 8	치매국가책임제, 과학기술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김기웅, 북인희
121	2018. 1. 23	항생제내성 수퍼박테리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정석훈, 윤장원, 김홍빈
122	2018. 2. 6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감염의 발생원인과 환자안전 확보방안	최병민, 이재갑, 임채만, 천병철, 박은철
123	2018. 2. 27	에너지전환정책, 과학기술자 입장에서 본 성공여건	최기련, 이은철
124	2018. 4. 5	과학과 인권	조효제, 민동필, 이중원, 송세련
125	2018. 5. 2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수학교육, 이대로 좋은가?	권오남, 박형주, 박규환
126	2018. 6. 5	국가 R&D 혁신 전략 – 국가 R&D 정책 고도화를 위한 과학기술계 의견 –	류광준, 유욱준
127	2018. 6. 12.	건강 100세를 위한 맞춤 식품 필요성과 개발 방향	박상철, 이미숙, 김경철
128	2018. 7. 4.	제1회 세종과학기술포럼	성창모, 박찬모, 이공래
129	2018. 9. 18	데이터 사이언스와 바이오 강국 코리아의 길	박태성, 윤형진, 이동수
130	2018. 11. 8	제10회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포럼(미래과학기술 오픈포럼) – 미래한국을 위한 과학기술과 정책 –	임대식, 문승현, 문 일
131	2018. 11. 23	아카데믹 캐피털리즘과 책임 있는 연구	박범순, 홍성욱
132	2018. 12. 4.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가?	이정재, 엄미정
133	2019. 2. 18.	제133회 한림원탁토론회 – 제17회 과총 과학기술혁실페이지포럼 수소경제의 도래와 과제	김봉석, 김민수, 김세훈
134	2019. 4. 18.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식재산권 창출과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	하홍준, 김승호, 정지선
135	2019. 5. 9.	제135회 한림원탁토론회 – 2019 세종과학기술 인대회 과학기술 정책성과와 과제	이영무
136	2019. 5. 22.	효과적인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방안'	곽승엽

MEMO

MEMO

www.kast.or.kr

본 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